

## V.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의 시행절차 및 쟁점

### 1.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의 시행절차

개인이 자신의 지원을 주도하면서 더 많은 선택과 통제권을 갖도록 지원하는 자기주도지원(self-directed support)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따른다.

- ① 신청 및 접수
- ② 서비스 자격(eligibility) 평가 및 예산(budgets) 산정
- ③ 지원계획(support plan) 작성
- ④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와 지방정부) 및 급여 제공
- ⑤ 집행(activity)
- ⑥ 정산
- ⑦ 성과평가(monitoring) 및 서비스 질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assurance)

#### 가. 신청 및 접수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이를 접수하게 된다.

#### 나. 서비스 자격 평가 및 예산(budgets) 산정

우선 자기주도지원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자격 평가를 받아야 한다. 사정은 장애인 당사자 뿐만 아니라, 기존에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 또는 보호자도 사정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신청에 따라 사정은 이용자의 집에서 받게 되며, 상황에 따라 사회서비스 센터나 일반 상담소에서 사정을 받을 수도 있다. 자격 평가를 위해서 서울시는 서비스 자격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자격기준은 현재 활동지원제도 기준을 준용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자격기준을 만들 수도 있다. 이 서비스 기준에 따라 서비스 자격을 평가하는데, 사정하는 사람은 서울시 또는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의 담당자로,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가로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비스 자격 평가는 지방정부의 고유권한이다. 서비스 자격평가가 마무리되면, 서울시는 개인에게 얼마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과정은 자격평가와 함께 시행된다. 예산 산정에 불만이 있는 경우이의 제기할 수 있다.

#### 다. 지원계획(support plan) 작성

지원범위 내에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지원방식을 찾아서 지원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이 때 지원계획은 자기사정에서 확인된 욕구를 반영하여야 하고, 성과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성과는 개인의 건강이나 만족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개인이 얻고자 하는 바, 삶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성과를 포함한다. 지원계획을 제대로 작성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신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 당신은 무엇이 변하고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 당신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개인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당신의 지원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
- 당신의 삶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 이런 일이 행해지기 위해 당신이 할 일은 무엇인가?

자기주도지원의 일부로써 개인예산을 받는 사람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는데, 본인이 스스로 할 수도 있고, 가족이나 친구, 서비스 제공자, 개인 중심 촉진자, 케어 매니저 또는 사회복지사, 독립적인 사람 또는 독립적인 조직, IL센터, 지원 브로커, 독립적인 옹호인, 라이프 코치, 재정 상담가 등의 도움을 받아 지원계획을 작성할 수도 있다. 이처럼 개인예산제도와 관련하여 자주 나오는 것이 중개(brokerage)의 개념이다(Carr, 2010; Gardner, 2011). 우리는 일상적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중개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또는 정보가 부족하여 중개인을 이용하기도 한다. 마찬가지로 지원 중개도 일반적인 중개와 같다고 보면 된다. 지원 중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포함한다. 즉 개인예산제 전 과정에서 중개지원을 활용할 수 있다.

- 무엇이 이용가능한지 알아내기
- 무엇이 가능한지 찾아내기
- 정보 제공하기
- 기술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 비공식적인 지원을 격려하고 발전시키기
- 지원과 자원을 조정하기
- 예산과 관련하여 개인이 의무와 책임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 무엇인가를 촉진하기
- 지원계획을 도와주기

이 때 사회복지사 등 주변 지원인은 가능한 위험에 대해 경계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기사정 과정 및 지원계획 작성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이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에서 과정을 이끌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회복지 실천은 선택과 위험의 균형을 잘 맞추는 것이 요구된다.

서비스 이용자만 참여하는 과정이 자기사정 및 자기주도 지원계획 작성이 아니다. 자기사정 및 자기주도 지원계획 작성의 목표는 서비스 이용자가 과정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의 기술은 이 과정을 통해 서비스 이용자를 촉진하고 지원하고 상담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자기사정에 따라 전문가들은 자신들의 전문성과 역할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필요 없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욕구를 판단할 때 서비스 이용자와 전문가 사이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이 때 권한약화된 서비스 이용자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사회복지사는 전문가와 이용자 사이의 관련 불균형을 인지하고 민감한 방식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하다. 실천가들은 사정이 가능한 객관적으로 유지되고 과정에서 서비스 이용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서비스 이용자들이 독립적인 지원이나 옹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사람 중심 계획은 personalisation의 목표를 실행하는데 주요한 도구로서 채택되어져 왔다. 지원 계획 수립이 사람 중심 계획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문가 중심이 아닌 이용자 중심임을 명심해야 한다. 사람 중심 계획의 주요 가치 중 하나인 지배권(ownership)은 지원 계획에 PCP접근법을 채택하게 만드는 주요 요소이다. 지배권은 선택과 결정을 하도록 지원을 받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으로, 개인이 자신의 삶에서 최종적이고 완전한 권한을 가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기술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또한 자립생활 센터 같은 독립 조직들이 자기사정 과정을 지원해 주는 방법도 있다.

## 라.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와 지방정부) 및 급여제공

이용자가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오면, 시의 담당자는 이 계획이 당사자 본인의 의사를 잘 반영한 것인지, 실제로 실현가능한지, 계획대로 했을 경우 안전 등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검토하고 협의하여 계획을 조정하여 확정한다. 계획이 확정되면 확정된 계획에 맞게 개인예산의 수정된 액수와 지출방법이 결정된다. 그리고 이 계획에 수정이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수정한다. 개인이 계획한 것이 이뤄질 수 있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면 어떤 것에든 개인예산을 지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로부터 서비스를 받거나, 지역사회의 다른 기관이나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데 이 돈을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장비구입비, 교통비, 휴가비, 학습활동비 등에도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급여사용 범위에 대한 결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원계획의 일부분으로 사정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하는 것, 도박이나 빚, 담배 또는 술, 불법적인 모든 것과 같은 서비스 또는 급여에 대해서는 개인예산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 마. 집행(activity)

개인예산 즉 현금은 반드시 분리된 은행 계좌에 보관되어야 한다. 이용자는 자기주도적으로 지원 계획에 따라 집행을 하면 된다. 개인예산은 개인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유연하게 개인에게 맞춰진 개인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게 정의된 서비스나 급여가 아니라면 거의 모든 분야에서 구입이 가능하다. 물론 집행과정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조직의 도움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만약 개인예산으로 지불하려고 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지원중개인(Support Broker)나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물어보면 된다. 이용자 스스로 돈을 관리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나 기관에서 이용자를 대신해서 관리해줄 수도 있다. 개인예산제를 이용하는 사람은 현금지급을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원을 관리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개인예산은 현금지급(direct payments), 관리형 예산제(managed personal budgets), 개인서비스펀드(individual service

funds)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다(Carr, 2010). 첫째, 개인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여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에도 서비스 이용자가 직접 운용할 수도 있고, 서비스 이용자가 운영하는데 역량이 부족한 경우 적절한 사람(suitable person)을 지정하여 운용할 수도 있다. 둘째, 관리형 예산제(managed personal budgets)가 있는데, 이 때 관리주체는 지방정부일 수도 있고, 공급자를 포함하는 제삼자일 수도 있다. 우선 지방정부에 의해 유지 관리되는 계좌(account)의 경우 이용자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정부에 의해 수행된 돌봄 서비스에 대해 지불하게 된다. 다음으로 공급자를 포함하는 제삼자가 유지 관리하는 계좌의 형태가 있다. 이 경우 이용자가 공급자와 직접 협상하여 돈을 지불한다. 이와 같은 별도의 관리 계좌를 개인서비스펀드(individual service funds)라고 한다. 이와 같은 방식은 현금지급제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직접적인 예산 관리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자신의 욕구에 적합한 계약을 만들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그리고 위 방식들의 다양한 혼합형태 가능하다.

## 바. 정산

서울시 담당자는 이용자의 지원이 잘 이뤄지고 있는지 이용자를 만나서 점검해야 한다. 이용자는 한 해가 끝날 때쯤 어떻게 돈을 사용했는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 담당자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즉 개인예산 사용에 대해 정산을 하여야 한다. 영국의 경우 대부분 1년 단위로 정산을 시행하고 있다. 정산 과정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경우 1개월 치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지방정부로 환수된다.

## 사. 성과평가 및 서비스 질에 대한 품질관리

검토(review) 단계는 서비스 이용자들이 지원계획을 고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선택, 융통성, 자기결정의 원칙들이 검토 단계에서도 완전히 녹아 있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서비스 이용자의 강점과 경험에 초점을 두면서, 개인들이 지원 계획의 일부분으로 나온 결과물을 검토하고 고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되어야 한다. 즉, 사회복지사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가 성찰적으로 고찰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시장화 전략이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하고, 취약한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안전한 선택을 보증하기 위해서 서비스 품질관리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2. 시행절차별 쟁점

시행절차별로 다양한 방식이 가능하고 방식별 쟁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5-1>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행절차별 쟁점**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이용자 - 서울시	1-1. 신청의 주체(본인, 대리인 등, 직권신청) 1-2. 신청 방법(현장, 온라인, 우편 등) 1-3. 신청 자격 1-4. 신청 접수 기관 1-5. 신청이후 결정결과통지까지의 소요기간

구 분	주 체	내 용
↓		
서비스 자격평가 및 예산 산정	서울시 또는 위탁기관	2-1. 자격 평가의 주체(기관) 2-2. 평가 도구 2-3. 평가 점수를 예산으로 변환하는 로직(예산 산정 방식)
↓		
지원계획 작성	이용자	3-1. 지원계획 작성 방법(수정 포함) 3-2.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작성 도구 3-3. 지원계획 작성 지원기관
↓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와 서울시	4-1. 계약서의 내용 (예산 허용 범위) 4-2. 대리인의 범위 및 지정방법
↓		
급여제공	서울시 ↓ 이용자	5-1. 급여의 형태(현금, 현금카드 등) 5-2. 급여의 내용(서비스 통합 정도) 5-3. 용도 용처의 제한 정도
↓		
집행	이용자	6-1. 활동보조인 고용 방식 6-2. (활동보조) 단가 산정 방법 6-3. 활동보조인의 범위 6-4. 계좌관리 방법(정산지원 포함)
↓		
정산	이용자 ↓ 서울시	7-1. 예산 집행 기간 7-2. 정산 기간 7-3. 정산의 정도
↓		
성과 평가 및 서비스 질에 대한 품질관리	서울시 또는 외부 위탁기관	8-1. 성과평가 방법 8-2. 품질관리 방법
전체 절차에 포괄하는 쟁점		9-1. 소득보장과의 관계 9-2. 재정 9-3. 옹호조직

## 가. 신청 및 접수

### 1) 신청의 주체

<표 5-2> 1안> (1차) 본인+대리인(가족)+후견인, (2차) 직권신청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현행법 준수 가능 <input type="checkbox"/> 실행 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당사자의 의견이 아닌 대리인 등의 의사결정 가능성 높음

**<표 5-3> 2안> (1차) 본인+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2차) 직권신청**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자기결정권 높임 <input type="checkbox"/> 지원의사결정 시도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지정 능력이 떨어질 경우 실행가능성 떨어짐. 이에 따라 오히려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질 수 있음. 또한 본인 지정 사실에 대한 진위확인 절차 및 방법이 필요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표 5-4> 1안> 방문신청+온라인(홈페이지) 신청+우편 신청+전화 신청+팩스 신청**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현행법 준수 <input type="checkbox"/> 높은 실행 가능성 <input type="checkbox"/> 신청 방법의 다양화로 제도 접근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당사자의 의견에 반한 대리인의 신청 가능성 높음

3) 신청자격

**<표 5-5> 1안> 등록 장애인, 6세-64세까지,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장애 정도에 대한 이중의 자격 기준 적용 안함. 장애계의 합의 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불필요한 신청 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아동의 경우 부모 등 대리인이 현금 집행 가능→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의존 가능성 높음

**<표 5-6> 2안> 1-3급 장애인, 6세-64세까지,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현행법(예-장애인활동지원제도)과 유사, 실행 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경증장애인 배제로 이중의 자격 기준 설정, 욕구 미반영 대상이 발생함. 아동의 경우 부모 등 대리인이 현금 집행 가능→대리인의 의사결정에 의존 가능성 높음

**<표 5-7> 3안> 1-3급 장애인, 18세-64세까지,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성인의 경우 자기 주도적 급여 사용이 가능하고, 급여 사용 범위의 확대 가능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실행 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자기 주도적 지원의 성과 파악 용이함	<input type="checkbox"/> 경증장애인 배제, <input type="checkbox"/> 연령 제한 등 이중의 자격 기준 설정, <input type="checkbox"/> 욕구 미반영 대상 발생 가능성

4) 신청접수기관(관리기관)

<표 5-8> 1안> 서울시(서울시, 구청, 동주민센터)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재정 주체로 사업의 통제관리 수월함. <input type="checkbox"/> 신청 상황에 따른 사업변경 등 신속한 대처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전담인력 채용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기존 인력의 업무 과다 가능성 큼 <input type="checkbox"/> 경직된 업무 처리 가능성 있음

<표 5-9> 2안> 공공기관위탁(서울복지재단,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전담인력 채용 쉬움(기간제 등)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발달장애에 대한 이해 높음 <input type="checkbox"/> 서울시복지재단의 경우 전 장애유형 포괄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전담인력의 연속성이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1-2곳의 기관 소재로 전체적으로 접근성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경우 타 장애영역의 반발 및 접근 가능성 떨어짐 <input type="checkbox"/> 직원 채용 등 추가 행정 발생 및 운영비 지원 필요

<표 5-10> 3안> 공모에 의한 민간기관 위탁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전담인력 채용 쉬움(기간제 등) <input type="checkbox"/> 지역 인프라 설치로 접근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이용자들의 심리적 안정감 있음 <input type="checkbox"/> 홍보 및 이용자 모집 용이함	<input type="checkbox"/> 기관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의 신청 배제 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직원 채용 등 추가 행정 발생 및 운영비 지원 필요 <input type="checkbox"/> 신청 상황에 따른 사업변경 등 신속한 대처 어려움

5) 신청 이후 결정결과통지까지의 소요기간

<표 5-11> 1안> 1개월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동일함.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장애인활동보조와 다르게 급여 사용의 다양성으로 획일적 소요기간 설정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음

나. 서비스 자격(eligibility) 평가 및 예산 산정

1) 자격평가의 주체(기관)

<표 5-12> 1안> 서울시에서 직접 평가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공공성으로 신뢰도 높을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평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평가 상황에 따라 예산 할당에 대한 신속한 조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전문성을 담보한 평가 인력 채용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공공성은 높은 반면에 전문성 부족으로 부정확한 평가 실시 우려됨. <input type="checkbox"/> (시군구에 평가 시스템을 두는 경우에 비해)접근성 다소 떨어짐

<표 5-13> 2안> 서울시복지재단 위탁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평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보다 장애 민감성으로 전문적인 평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전문성을 담보한 평가 인력 채용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시군구에 평가 시스템을 두는 경우에 비해)접근성 다소 떨어짐

<표 5-14> 3안>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위탁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유형에 대한 평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지자체보다 장애 민감성으로 전문적인 평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기관 기능 상 발달장애인과 장애인의 평가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시군구에 평가 시스템을 두는 경우에 비해)접근성 다소 떨어짐

<표 5-15> 4안> 국민연금공단 위탁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기존 제도의 평가 업무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함. <input type="checkbox"/>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평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지사 활용 시, 서울시, 서울시복지재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평가에 비해) 접근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공단에 대한 새로운 기능 설정에 따른 협의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 운영비 지원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서울시 시범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개입 가능성 높음

<표 5-16> 5안> 민간기관에 위탁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지역 인프라 설치로 접근성과 평가 신속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평가 가능	<input type="checkbox"/> 전문성을 담보한 평가 인력 채용 필요 <input type="checkbox"/> 평가 결정에 대한 권한이 낮음 <input type="checkbox"/> 평가 상황에 따라 예산 할당에 대한 신속한 조정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기존 서비스 이용자와의 관계성 등으로 인해 평가의 객관성 확보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이용자들의 신뢰도 하락 가능성 존재

2) 평가도구

<표 5-17> 1안> 기존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활용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별도 추가 예산 없음 <input type="checkbox"/>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평가 가능	<input type="checkbox"/> 기존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에 대한 불신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 필요함(특히 발달장애인 점수 하락에 대한 불만 제기 가능)



<표 5-18> 2안> 독자적 기준 마련 - 점수체계로 기준 마련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평가도구 개발 가능. → 서울형 모델 제시 가능 <input type="checkbox"/> 모든 장애유형에 대한 평가 가능	<input type="checkbox"/> 도구 개발에 추가 비용 및 시간 소요 <input type="checkbox"/> 평가도구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존재

<표 5-19> 3안> 독자적 기준 마련 - 장애정도, 서비스 접근성 등에 따른 기준 마련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사업 목적에 따른 탄력적 평가 기준과 서울형 모델 제시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욕구 미반영 장애인이 발생함. 평가기준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있음

3) 예산산정방법

<표 5-20> 1안> 평가도구에 의해 산출된 점수(point)에 단가를 곱하여 총 금액 산정함 (point × f, f=포인트 당 단가)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단가 산정 시 기존 제도(활동지원 등)에서 고려하지 못한 부분을 반영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f(포인트 당 단가) 산정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f(포인트 당 단가) 산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가능성 존재

<표 5-21> 2안> 기존 제도(활동지원 등)의 예산 산정 방식 준용. 기존 제도의 서비스 급여를 합산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별도 추가 예산 없음.	<input type="checkbox"/> 추가로 필요한 급여액 지급 가능성 낮음

<표 5-22> 3안> 기존 제도(활동지원, 시 추가 등)에 따른 예산에 할인율(15%) 적용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기관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약 25%) 중 일부를 제외하고 지급함으로써 합리성 높아짐(다만 10% 정도는 개인의 행정비용에 소요)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들의 반발 가능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15% 기준에 대한 합의 또는 이해 어려움

<표 5-23> 4안> 장애정도에 따라 일정금액의 기준 적용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사업운용 및 행정의 용이함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인에 대한 우선 지원 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욕구 미반영 장애인이 발생함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의 경우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지원액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발생 가능 <input type="checkbox"/> 관의 편의주의 강조로 이용자의 불신 증가함

※ 4안의 예시

- 자해, 타해성이 심각하여 기존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그룹(A그룹) - 50만원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접근성도 확보되어 있으나 가족의 결정으로 장애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그룹(B그룹) - 30만원
- 경증의 발달장애라 서비스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려운 그룹(C그룹) - 20만원

**다. 지원계획(support plan) 작성**

1) 계획서 작성방법

**<표 5-24> 1안> 전적으로 개인(지원 포함)이 작성: 지원자 또는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또는 지원 없이, 개인이 작성**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지체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낮을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인의 경우 공식적인 지원 체계의 목소리와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우려 있음

**<표 5-25>2안> 지원기관에서 작성하고 개인이 동의: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자 또는 지원기관이 지원계획을 작성**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시행가능성이 높음 <input type="checkbox"/> 편리하고 신속함	<input type="checkbox"/> 단일 지원기관 선정의 어려움(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할 경우 지체장애계의 반발) <input type="checkbox"/> 형식적인 이용자의 의견만 반영한 관 중심의 지원계획수립 가능성 존재 <input type="checkbox"/> 전문성 있는 인력 채용의 어려움

**<표 5-26> 3안> 장애인복지관 등을 지정한 후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계획 작성 비용 지급 (지원계획 작성의 시장화 및 경쟁 방식)**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실현 가능 <input type="checkbox"/> 장애계의 합의 가능	<input type="checkbox"/> 시장화에 대한 반대 여론 형성 가능 <input type="checkbox"/> 지원계획 작성 기관 선정의 어려움(시범사업 동안 최소 3개 이상 기관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해 이용자의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2)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작성도구(PCP 활용방안)방안

**<표 5-27>1안> 기존 사정도구 활용**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기존 종사자가 숙련된 도구 사용으로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기관마다 다른 사정도구로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함.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 지원의 목적이 아닌 전문가 중심의 지원을 위한 사정 도구로 장애계의 반발 가능성 큼

**<표 5-28> 2안> PCP활용**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인 중심의 유연한 계획 수립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함(최선의 해석)	<input type="checkbox"/> PCP에 대한 정확한 이해 부족한 현실 <input type="checkbox"/>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전문인력 교육 등에 추가적인 재정 필요 <input type="checkbox"/> 계획수립에 장시간 소요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낮을 수 있음

3) 지원계획 작성 지원기관 또는 지원자의 인정범위원자의 인정 범위

**<표 5-29> 1안> 지자체에 한정된 지원기관(개인은 인정 안 함)**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신청접수, 자격평가/예산산정을 함께 수행할 경우) 예산할당과 지원계획에 대한 효율적 관리가능함 <input type="checkbox"/> One-stop서비스체계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지원계획에 따른 공공 및 민간서비스 연계 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지원계획 수립에 대한 전문성이 약함 <input type="checkbox"/> 경직된 행정 처리로 장애인의 자기주도 실현의 제한 가능성 존재 <input type="checkbox"/> 전문 전담인력 채용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업무과다로 형식적인 사업 운용 가능함

**<표 5-30> 2안> 공공기관에 한정된 지원기관(개인은 인정 안 함)**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시행가능성 높음. 전문성 강화 가능 <input type="checkbox"/> 전담인력 배치 가능	<input type="checkbox"/> 단일 지원기관 선정의 어려움(발달장애인지원센터로 할 경우 지체장애계의 반발) <input type="checkbox"/> 업무 과다로 신속한 계획 수립에 어려움이 발생 가능 <input type="checkbox"/> 관료주의(지자체의 관리감독, 실적위주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input type="checkbox"/> 추가 인력 채용 및 운영비 필요

**<표 5-31> 3안>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복지관, 단체 등 포함)에 한정된 지원기관(개인은 인정 안 함)**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시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전문성 강화 가능 <input type="checkbox"/> 전담인력 배치 가능	<input type="checkbox"/> 지원기관 선정의 공정성 시비 및 어려움 발생 가능 <input type="checkbox"/> 관료주의(지자체의 관리감독, 실적위주 등)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 존재 <input type="checkbox"/> 추가 인력 채용 및 운영비 필요

※ 당사자에게 지원계획을 작성하여 동의를 획득한 지원계획수립기관의 경우, 서비스 제공 불가능

<표 5-32> 4안>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지원기관 + 이용자를 잘 아는 개인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의 친화적 자원 활용 가능(이용자를 잘 아는 주변 사람 또는 이용 경험이 많은 이용자 활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지체장애인의 적극적인 참여 가능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낮을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을 인정할 수 있는 기준 설정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전문성을 담보할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현금 오용의 가능성이 커짐

### 라.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와 지방정부)

#### 1) 계약서의 내용

- 각 절차에 따른 기본적인 내용 포함
- 예산 허용 범위: 술, 도박, 사행성 서비스 및 품목의 구입 불가능
-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 삽입 필요

#### 2) 대리인의 범위 및 지정방법

- 계약 당사자?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표 5-33> 1안> 가족을 대리인으로 인정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성 낮아 질 수 있음

<표 5-34> 2안>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 <input type="checkbox"/> 지원의사결정제도 시범사업 가능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낮을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대리인 범위 설정 및 지정절차 마련 필요 <input type="checkbox"/>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음

### 마. 급여 제공

#### 1) 급여의 형태

<표 5-35> 1안> 체크카드 운용방식(별도의 전용계좌 운용)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함. 정산의 용이함	<input type="checkbox"/> 카드 사용이 어려운 곳에서는 집행 어려움

<표 5-36> 2안> 현금지급방식(별도의 은행계좌 운용)

장점	단점
□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	□ 정산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체크카드나 신용카드 검용으로 할 경우 어려움 감소)

2) 급여의 내용(서비스 통합정도)

□ 어떤 서비스까지 통합할 것인가?

- 장애인복지 서비스의 칸막이 제거를 통한 통합성과 유연성 강화
-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하여 아동중심의 서비스와 성인중심의 서비스로 크게 구분하는 체계로 정하고, 단계적으로 서비스 통합을 추진함
- 활동지원제도 + 사회서비스(바우처) + 사회서비스(공급자지원방식) + 비사회서비스(택시비, 전차레인지, 편의시설 개조 등) + 거주서비스
- 방안 예시

- 1단계로 아동중심의 서비스는 보호와 양육을 중심으로 하고,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돌봄서비스 등을 서비스 시스템에 통합하며, 아동보육서비스와 세밀하게 연계되도록 함. 성인중심의 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발달재활), 보조기구서비스 등을 서비스 시스템에 통합함
- 2단계에서는 거주시설서비스와 장애인복지관의 상당부분 서비스(개별귀속성이 높은 서비스)도 포괄하고, 이들 서비스의 진입점을 활동지원제도 이용을 위한 진입점으로 통합함
- 이 외에 기존 사회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및 재화를 통합하고 유연화함

3) 용도 및 용처의 제한정도

<표 5-37> 1안> 용도, 용처 제한 없음

장점	단점
□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	□ 정산의 어려움 발생 가능 □ 부정사용 등에 대한 국민의 불신 가능(실제로 부정사용 발생 시 국민의 불신 증가) □ 기존 제공기관의 사업 및 수익이 축소될 가능성 존재

□ 도박, 술, 담배 등 윤리에 반하는 품목에 대한 사용금지

□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의식주 품목에 사용금지(소득보장과의 차별성)

<표 5-38> 2안> 기존 사회서비스에만 한정 (용도 제한, 용처 제한)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안전성과 관리의 용이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실질적인 당사자 권한 실현이 불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욕구를 반영할 수 없음

<표 5-39> 3안> 용도 제한 없고, 용처만 제한(제공기관에만 한정)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안전성과 관리의 용이성	<input type="checkbox"/> 실질적인 당사자 권한 실현에 제한 존재 <input type="checkbox"/> 기존 제공기관에 한정할 경우 사회통합이 저해됨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제공기관 지정의 경우 추가 행정 및 비용 필요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의 급여 사용의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음(예- 영화관람 후 식사는 복지관에서). <input type="checkbox"/> 기존 제공기관에서 다양한 급여내용을 포괄하지 않을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제공기관의 시행가능성 의문시 됨

<표 5-40> 4안> 용도 제한, 용처 제한 없음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실현에 제한 존재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욕구를 반영하지 못함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의 급여 사용의 편의성이 떨어질 수 있음(예-이용자의 사회활동연계 식비는 가능하나, 활동보조인의 식비는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기존 제공기관의 사업과 수익이 축소될 수 있음(와해)

## 바. 집행(activity)

### 1) 활동보조인 고용방식

<표 5-41> 1안> 기관 중개(현행 유지)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일정 자격을 가진 인력 배치 가능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질에 대한 관리 가능	<input type="checkbox"/> 활동보조인 선택에 제한 존재 <input type="checkbox"/>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활동보조인 배치 불가능성 존재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중심의 활동보조인 활용계획에 대한 유연성 확보 어려움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면 기관에서 활동보조인 연계

**<표 5-42> 2안> 직접 고용**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실현 가능 <input type="checkbox"/> 탄력적인 고용계약으로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활용 가능	<input type="checkbox"/>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부담감 발생 <input type="checkbox"/> 법적 분쟁이 발생할 시 개인 대응에 어려움 존재 <input type="checkbox"/> 원활한 활동보조 인력 수급의 어려움 존재 <input type="checkbox"/> 서비스 질을 담보한 인력 채용에 한계 존재

이용자가 광고 등을 통해 활동보조인 모집 및 계약

**<표 5-43> 3안> 혼합**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와 의사에 따른 다양한 선택지 제공 가능	<input type="checkbox"/> 별도의 사업 기준 및 지침 필요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사업관리의 복잡성 발생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기관 중개와 직접 고용을 선택 활용

**2) 활동보조 단가산정 방법**

**<표 5-44> 1안> 현행 단가(고시) 유지**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단가 설정에 대한 근거 마련 용이함	<input type="checkbox"/> 직접고용, 혼합 고용 방식에 필요한 별도 기준의 추가 설정 필요함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단가, 다른 서비스의 경우 실제 비용

**<표 5-45> 2안> 새로운 단가 고시**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본 사업 특성을 고려한 단가 제시 가능	<input type="checkbox"/> 단가 설정에 대한 타당성 문제 제기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단가 고시에 필요한 추가 소요 시간 및 비용 발생함

복지 서비스 품질 관리 및 표준화를 위한 서비스 표준단가 산출

※ 예시 : 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이용시 표준단가는 시간당 14,000원

**<표 5-46> 3안> 자율계약 방식**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실현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탄력적인 고용계약으로 (최)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인 활용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부담감 발생함 <input type="checkbox"/> 상이한 단가로 총 급여액이 낮거나 낮은 단가를 제시하는 이용자의 경우 활동보조인력 채용이 어려울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실제 서비스 보다 낮은 또는 높은 가격으로 부적절한 단가 책정이 가능함(낮은 가격의 경우 근로기준법 위배 가능성 있음)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사이의 자율 계약에 의함. 다른 서비스의 경우 실제 비용 지불

3) 활동보조인의 범위

<표 5-47> 1안> 현행 유지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시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최)중증장애인 이용자의 활동보조인 배치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가족 활동보조인을 원하는 장애인 욕구 증가 등 현안을 반영하지 못함

<표 5-48> 2안> 가족까지 범위 확대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유연한 인력수급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배치 가능성 커짐	<input type="checkbox"/> 실제 활동 시 당사자의 권한 실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부정수급이 증가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가족 활동보조인의 서비스를 질을 담보할 수 없음

이 경우에도 현행 체계에서는 활동보조인 자격은 필요함

가족의 범위: 모든 가족

가족의 경우 직접고용은 불가능하고, 중개기관을 통한 연계만 가능하도록

4) 계좌관리방법(정산지원 포함)

<표 5-49> 1안> 당사자 권한통제에 따라 당사자 집행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정산의 어려움 발생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인의 경우 체계적인 지원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학대의 가능성 커질 수 있음

<표 5-50> 2안> 당사자 권한통제에 따라 시행기관(신청기관) 집행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함.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시행기관의 관리통제가 개입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실질적인 당사자 권한 실현이 불가능 할 수 있음



**<표 5-51> 3안> 당사자 권한통제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재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집행**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함.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전문적인 재정관리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재정관리 지원에 대한 수수료 발생함. <input type="checkbox"/> 자격 기준 설정 등 추가 행정 업무 및 비용이 필요함

**<표 5-52> 4안> 혼합**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실행 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다양한 혼합 비율 설정 등에 따라 관리감독의 어려움이 발생함

※ 예시 : 예산의 50%는 직접 관리, 50%는 3안 사용

**사. 정산(내역과 영수증 제출)**

**1) 예산집행기간(지원계획의 시행기간)**

**<표 5-53> 1안> 1년, 6개월, 3개월 중 이용자가 선택 가능**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유연성 확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관리의 복잡성 및 행정 비용이 증가함

**<표 5-54> 2안> 모든 이용자에게 1년 적용**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회계연도에 따른 사업진행 및 관리 용이함	<input type="checkbox"/> 획일 된 집행 기간으로 지원계획과 집행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함. <input type="checkbox"/> (정산기간이 동일할 시)부정사용에 대한 감시 기능 약화됨→ 국민 불신 초래 가능, 관리의 어려움

**<표 5-55> 3안> 모든 이용자에게 6개월 적용**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현 지자체 예산 집행 구조(기간)에서 시범사업 기간으로 설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획일 된 집행 기간으로 지원계획과 집행의 다양성을 담보하지 못함 <input type="checkbox"/> 다소 짧은 기간으로 정확한 성과 파악에 어려움 있음

**<표 5-56> 4안> 지원 금액의 규모에 따라 6개월과 1년으로 구분**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관리의 용이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집행 내용에 따른 기간의 적절성을 담보하지 못함. <input type="checkbox"/> 기간 설정의 타당성에 대한 문제제기 발생 가능함

**2) 정산기간**

<표 5-57> 1안> 예산집행기간과 동일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확대됨 <input type="checkbox"/> 유연성 확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행정비용 감소함	<input type="checkbox"/> 오용과 부정사용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수 있음

<표 5-58> 2안> 예산집행기간 중 2회(중간정산/최종정산)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오용과 부정사용에 대한 통제 가능성 존재	<input type="checkbox"/> 1안 보다는 행정비용이 증가함

<표 5-59> 3안> 매월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현행과 동일함 <input type="checkbox"/> 실행 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안전성 증가함	<input type="checkbox"/> 집행의 유연성이 감소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실질적인 당사자 권한 실현이 불가능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행정비용이 증가함

3) 정산의 정도

<표 5-60> 1안> 100% 정산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국민의 신뢰 확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사업의 안정성 증가함	<input type="checkbox"/> 실질적인 당사자 권한 실현이 제한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이용자의 증빙에 대한 과제부담 발생함(증빙관련 과제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재정관리서비스 지원 수수료 등 재정 부담 발생)

<표 5-61> 2안> 간접비(활동 중 발생하는 비용, 15%, 10%, 20%)에 대한 인정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집행의 유연성이 증가함. <input type="checkbox"/> 당사자 권한 실현이 증가함. <input type="checkbox"/> 증빙이 어려운 부분에 대한 집행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및 관리기관의 행정업무 간소화	<input type="checkbox"/> 불허용 예산항목에 대한 사용 가능성 커짐 <input type="checkbox"/> 국민적 불신 초래 가능함

아. 성과평가 및 서비스 질에 대한 품질관리

1) 성과평가방법

<표 5-62> 1안>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 이용자 표집 후 사업평가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편리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개별적 성과를 파악하기 어려움

**<표 5-63> 2안> 개인별 성과평가(외부평가)**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개인성과 등의 객관적 파악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삶의 질, 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일정 시간 및 비용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외부 평가 기관 선정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낮음

**<표 5-64> 3안> 개인의 성과평가(자기평가)**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삶의 질, 만족도 등에 당사자 평가 가능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다양한 의견 수렴 가능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눈치 보기로 인하여 무조건 좋게 평가할 가능성 큼 <input type="checkbox"/> 자기 평가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지원 방안을 고려해야 함

정산 시 자기기입식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2) 품질관리방법**

**<표 5-65> 1안> 제공기관 평가**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편리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개인의 만족도 등의 객관적 평가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제공기관 평가 후 정보공개 등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개입 부재 시 평가의 실효성 없음

**<표 5-66> 2안> 제공기관 평가 후 정보공개**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선택권 실현에 도움. <input type="checkbox"/> 실행가능성 높음. <input type="checkbox"/> 편리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정보 공개에 따라 부실한 제공기관 선택 제외 (퇴출)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본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검토 및 마련이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지속적인 정보 관리를 위한 기관(인력) 필요함

**<표 5-67> 3안> 이용자 평가**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자기주도지원 모형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삶의 질이나 만족도 등에 대한 개인의 평가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제공기관에 의해 시행할 경우)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제공기관에 의한 조작 가능성 있음 <input type="checkbox"/> 평가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지원을 고려해야 함

자. 전체 절차에 포괄하는 쟁점

1) 소득보장과의 관계

- 소득보장 포함하면 안 됨
- 저축으로 이어지면 안 됨
-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의식주 품목에 사용금지

2) 재원

<표 5-68> 1안> 조세-항·목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서울시의 경우 초기 적용이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향후 확장(서비스 통합, 서비스 유연화)에 불리함 <input type="checkbox"/> 항-목간에 이용과 전용의 문제가 발생함. <input type="checkbox"/> 매번 재경부의 허가 받아야 함

<표 5-69> 2안> 기금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향후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등의 조세를 합쳐도, 이용이나 전용의 문제없이 사용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책임 소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결산의 문제 발생 가능함

- 몇 개 항·목을 모아서 기금으로 설치

<표 5-70> 3안> 사회보험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안정적 재정 확보 가능 <input type="checkbox"/> 장애 현상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인식 개선이 필요함(누구나 장애인이 될 수 있고, 상호원조가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실현 가능성 낮음(보험료를 낸 사람이 급여를 받지 못할 확률이 높고,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이 주로 급여를 받게 됨)

3) 옹호조직 지정

- 지원계획 작성, 재정관리(계좌관리 및 정산) 지원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이용과정의 옹호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정보제공, 상담, 모니터링 등 옹호 및 지원서비스 제공

**<표 5-71> 1안> 자립생활센터 지정위탁(시군구별 1개소)**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실질적인 지원과 옹호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활동비 지원만으로 진행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발달장애인에 대한 전문성 부족할 수 있음(발달장애계의 반발 가능)

**<표 5-72> 2안> 새로운 옹호조직의 설립**

장점	단점
<input type="checkbox"/> 객관성 확보 가능함(기관 지정에 대한 시비를 줄일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사업 목적에 맞게 전문성이 확보된 기관을 새롭게 설치 가능함	<input type="checkbox"/> 장애에 대한 민감성 확보가 불투명함. <input type="checkbox"/> 초기 설치비용 등 추가 재정 필요함

<표 5-73> 시행절차의 쟁점별 다양한 추진방식

신청절차	쟁점	1안	2안	3안	4안
신청 및 접수	신청의 주체	<input type="checkbox"/> 1차: 본인+대리인(가족)+ 후견인 <input type="checkbox"/> 2차: 직권신청	<input type="checkbox"/> 1차: 본인+본인이 지정 한 대리인 <input type="checkbox"/> 2차: 직권신청	-	-
	신청 방법	<input type="checkbox"/>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등), 우편, 전화, 팩스 신청	-	-	-
	신청 자격	<input type="checkbox"/> 6-64세 등록 장애인(거 주시설 거주장애인 제외)	<input type="checkbox"/> 6-64세 1-3급 장애인(거 주시설 거주장애인 제외)	<input type="checkbox"/> 18-64세 1-3급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장애인 제외)	-
	신청 접수 기관	<input type="checkbox"/> 서울시(서울시, 구청, 동 주민센터)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위탁(서울시복지 재단, 발달장애인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공모에 의한 민간기관 위탁	-
	신청-결과통지 기간	<input type="checkbox"/> 1개월	-	-	-
서비스 자격 평가 및 예산 산정	자격평가 주체(기관)	<input type="checkbox"/> 서울시 직접 평가	<input type="checkbox"/> 서울시복지재단 위탁	<input type="checkbox"/>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 센터 위탁	<input type="checkbox"/> 국민연금공단위탁
	평가 도구	<input type="checkbox"/> 기존 활동지원제도 인정 조사표 활용	<input type="checkbox"/> 독자적 기준(점수체계로) 마련	<input type="checkbox"/> 독자적 기준(장애정도, 서비스 접근 등을 반영) 마련	-
	예산 산정 방법	<input type="checkbox"/> 평가도구 산출점수 당 단 가를 곱하여 총 금액 산정	<input type="checkbox"/> 기존 제도(활동지원 등) 의 예산 산정방식 준용, 총 서비스 급여 합산	<input type="checkbox"/> 기존 제도(활동지원 등) 의 예산에서 할인율 (15%) 적용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 등에 따라 일 정금액 적용

신청절차	쟁점	1안	2안	3안	4안
지원계획 작성	지원계획 작성 방법(수정 포함)	<input type="checkbox"/> 개인이 직접 작성(지원포함)	<input type="checkbox"/> 지원기관에서 이용자의 상담과 동의를 통해 작성	<input type="checkbox"/> 장애인복지관 등 다수의 기관 지정, 이용자가 동의한 기관에서 지원계획 작성	-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작성 도구	<input type="checkbox"/> 기존 사정도구 활용	<input type="checkbox"/> PCP활용	-	-
	지원계획 작성 지원기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에 한정(개인 미 인정)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에 한정(개인 미 인정)	○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에 한정(개인 미 인정)	○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이용자를 잘 아는 개인
지원계획 합의	계약서의 내용(예산 허용 범위)	<input type="checkbox"/> 각 절차의 기본적 내용, 예산허용범위,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방법 등 포함	-	-	-
	대리인의 범위 및 지정방법	<input type="checkbox"/> 가족을 대리인으로 인정	<input type="checkbox"/>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	-	-
급여제공	급여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별도계좌운용)	<input type="checkbox"/> 현금지급(별도계좌운용)	-	-
	급여의 내용(서비스 통합정도)	<input type="checkbox"/> 활동지원법 개정, 아동, 성인서비스로 구분 <input type="checkbox"/> 활동지원+사회서비스(바우처)+사회서비스(공급자 지원)+비사회서비스+거주서비스 등 단계적 통합	-	-	-
	용도·용처의 제한 정도	<input type="checkbox"/> 용도, 용처 제한 없음	<input type="checkbox"/> 기존 사회서비스에 한정(용도, 용처 제한)	<input type="checkbox"/> 용도제한 없고, 용처에만 제한 (제공기관에만 한정)	<input type="checkbox"/> 용도 제한, 용처에 제한 없음

신청절차	쟁점	1안	2안	3안	4안
집행	활동보조인 고용방식	<input type="checkbox"/> 기관중개(현행유지)	<input type="checkbox"/> 직접고용	<input type="checkbox"/> 혼합고용	-
	활동보조인 단가산정 방법	<input type="checkbox"/> 현행 단가(고시) 유지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단가 고시	<input type="checkbox"/> 자율 계약 방식	-
	활동보조인의 범위	<input type="checkbox"/> 현행 유지	<input type="checkbox"/> 가족까지 범위 확대(직접 고용 불가, 기관중개고용 만 가능)	-	-
	계좌관리방법 (정산지원 포함)	<input type="checkbox"/> 당사자 권한통제에 따른 직접 집행	<input type="checkbox"/> 당사자 권한통제에 따른 시행기관 집행	<input type="checkbox"/> 당사자 권한통제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재정관 리서비스 기관 집행	<input type="checkbox"/> 혼합 집행 방식
정산	예산집행 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6개월, 3개월 중 이 용자가 선택	<input type="checkbox"/> 1년(모든 이용자)	<input type="checkbox"/> 6개월(모든 이용자)	<input type="checkbox"/> 6개월, 1년 (지원금액에 따른 구분)
	정산기간	<input type="checkbox"/> 예산집행기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예산집행기간 중 2번(중 간, 최종 정산)	<input type="checkbox"/> 매월	-
	정산의 정도	<input type="checkbox"/> 100% 정산	<input type="checkbox"/> 간접비(10%, 15%, 20%) 인정	-	-
성과평가 및 서비스에 대한 품질관리	성과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체 사업에 대한 평가(이용자 표집 후 사업 평가)	<input type="checkbox"/> 개인별 성과평가(외부평가)	<input type="checkbox"/> 개인별 성과평가(자기 평가)	-
	품질관리방법	<input type="checkbox"/> 제공기관 평가	<input type="checkbox"/> 제공기관 평가 후 정보 공개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평가	-
전체 절차에 포괄하는 쟁점	소득보장과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소득보장 미포함, 저축 불인정, 사회활동 미 연계 의식주 비용은 사용 불가	-	-	-
	재정	<input type="checkbox"/> 조세(항-목)	<input type="checkbox"/> 기금	<input type="checkbox"/> 사회보험	-
	옹호조직	<input type="checkbox"/> 자립생활 지정 위탁	<input type="checkbox"/> 새로운 옹호조직 설립	-	-



## VI. 일반적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모형 및 쟁점

### 1. 일반적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모형

우선 지급되는 개인예산의 지출에 대하여 용도의 제한여부, 용처의 제한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유형의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가 가능하다.

<표 6-1> 용도 용처 제한에 따른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모형

구분	용도가 제한됨	용도가 제한되지 않음
용처가 제한됨	용도와 용처가 제한됨 (바우처 제도와 동일)	용도는 제한되지 않으나 용처가 제한됨 (기관지정 개인예산제도)
용처가 제한되지 않음	용도가 제한되나 용처는 제한되지 않음 (소극적 개인예산제도)	용도와 용처의 제한이 없음 (적극적 개인예산제도)

또한 자기주도지원예산을 잘 사용하도록 돕는 지원서비스의 수준, 지급한 돈의 사용에 대한 증빙 요구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유형의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가 가능하다.

<표 6-2> 지원과 규제에 따른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모형

구분	서비스 계획수립과 탐색 등에 대한 낮은 지원	서비스 계획 수립과 탐색 등에 대한 높은 지원
낮은 규제 (지불정산 요구 안함)	낮은 지원과 낮은 규제 (소득보장 수당과 동일)	높은 지원과 낮은 규제 (자율형 개인예산제도)
높은 규제 (지불정산 요구)	낮은 지원과 높은 규제 (규제형 개인예산제도)	높은 지원과 높은 규제 (관리형 개인예산제도)

결과적으로 용도의 제한여부, 용처의 제한 여부의 차원과 돈 지출에 대한 지원서비스의 수준, 지급한 돈에 대한 지출 증빙의 요구 수준을 조합하면 매우 다양한 제도 모형의 설계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장애인서비스 확대와 통합작업의 상황에 맞추어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적용확대를 위한 단계적 모형을 개발할 수 있다. 따라서 5장에서 살펴본 쟁점에 따라 현재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시행 가능한 일반적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개인예산제) 모형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6-3> 일반적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행절차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이용자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주체	1차)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 2차) 직권신청
		신청방법	<input type="checkbox"/>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등), 우편, 전화, 팩스
		신청자격	<input type="checkbox"/> 6세-64세의 등록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
		신청접수기관	<input type="checkbox"/>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또는 읍면동

구분	주체	내용	
		(관리기관)	주민센터
		신청 - 결과통지소요기간	<input type="checkbox"/> 1개월
서비스 자격평가 및 예산 산정	지자체 또는 국민연금공단	자격평가 주체기관	<input type="checkbox"/> 지자체 직접 또는 국민연금공단 위탁 평가
		평가도구	<input type="checkbox"/> 개선된 기존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예산산정 방법	<input type="checkbox"/> 평가도구 산출 포인트 당 단가를 곱하여 총 금액 산출
지원계획 작성	이용자 - 지원계획 지원기관	지원계획 작성방법	<input type="checkbox"/> 개인(지원포함)이 작성하거나 다수의 지원기관 중 이용자가 동의한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원계획 수립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작성방법	<input type="checkbox"/> PC활용
		지원계획 지원 기관 및 개인 범위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이용자를 잘 아는 개인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계약서 내용	<input type="checkbox"/> 절차에 포함된 기본적인 내용, 예산 허용 범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 등 포함
		대리인 범위 및 지정방법	<input type="checkbox"/>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
급여제공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이용자	급여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현금 또는 체크카드 지급 (별도의 전용계좌 필요)
		급여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아동) 보호와 양육 중심 활동지원, 발달재활, 장애아동돌봄 등 서비스 통합, 이후 아동보육과 연계
			<input type="checkbox"/> 성인) 자립생활지원 활동지원, 주간활동, 보조기구 등 서비스 통합
용도·용처 제한정도	<input type="checkbox"/> 용도·용처 제한 없음		
집행	이용자	활동보조인 고용방식	<input type="checkbox"/> 혼합(직접고용+기관연계고용)
		활동보조인 단가산정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고용의 경우 자율계약방식, 기관고용의 경우 기존 활동보조 단가 적용
		활동보조인 범위	<input type="checkbox"/> 모든 가족 고용 가능 *단, 가족 활동보조인의 경우 직접고용 불가, 기관 연계 고용만 가능

구분	주체	내용	
		계좌관리방법 (정산지원포함)	<input type="checkbox"/> 혼합(직접관리 또는 일정 부분 이용자가 지정한 재정관리 서비스 기관 위탁 관리)
정산	이용자 ↓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예산집행기간	<input type="checkbox"/> 1년, 6개월, 3개월 중 이용자가 선택 가능
		정산기간	<input type="checkbox"/> 예산집행기관과 동일
		정산의 정도	<input type="checkbox"/> 급여비용 100% 정산
성과 평가 및 품질관리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 외부 평가기관	성과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개인별 성과평가 (외부 평가, 당사자 자기 평가)
		품질관리방법	<input type="checkbox"/> 제공기관평가 후 정보공개, 이용자 평가
전체 절차에 관한 포괄 쟁점	<input type="checkbox"/> 소득보장과의 관계 : 소득보장 미포함, 저축 불인정, 사회활동과 미 연계된 의식주 비용 사용 불가		
	<input type="checkbox"/> 재원마련 : 관련 항목의 예산을 합산한 비용을 기금으로 설치		
	<input type="checkbox"/> 옹호조직 지정 : 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조직 지정 위탁(시군구별 1개소)		

## 가. 신청 및 접수

### 1) 신청의 주체

- (1차) 본인+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 (2차) 직권신청

### 2) 신청방법

- 방문신청+온라인(홈페이지) 신청 + 우편신청 + 전화신청 + 팩스신청

### 3) 신청자격

- 등록 장애인, 6세-64세까지,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제외

### 4) 신청접수기관(관리기관)

- 보건복지부-시도-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 5) 신청 이후 결정결과통지까지의 소요기간

- 1개월

## 나. 서비스 자격(eligibility) 평가 및 예산 산정

### 1) 자격평가의 주체(기관)

- 1안) 지자체에서 직접 평가
- 2안) 국민연금공단 위탁

### 2) 평가도구

-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수정.
- 현재 인정점수가 발달장애인 등에게 불합리하게 적게 나오게 하는 평가방식의 개선

### 3) 예산 산정방법

- 평가도구에 의해 점수(point)에 점수 당 단가를 곱하여 총 금액 산정( $\text{point} \times f$ ) f=포인트 당 단가
- 다. 지원계획(support plan) 작성

#### 1) 지원계획 작성방법

- 1안) 전적으로 개인(지원 포함)이 작성: 지원자 또는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또는 지원 없이, 개인이 작성
- 필요한 경우 2안) 장애인복지관 등 몇 개 기관을 지정하고 개인이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계획 작성 비용 지급(지원계획 작성의 시장화 및 경쟁 방식)

#### 2)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작성도구(PCP 활용방안)

- PCP활용

#### 3) 지원계획 작성 지원기관 또는 지원자의 인정범위

-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지원기관 + 이용자를 잘 아는 개인

## 라.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와 지방정부)

### 1) 계약서의 내용

- 포함된 기본적인 내용
- 허용 범위: 술, 도박, 사행성 서비스 및 품목의 구입 불가능
-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 삽입 필요

## 2) 대리인의 범위 및 지정방법

- 계약 당사자?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

## 마. 급여 제공

### 1) 급여의 형태

- 현금지급과 체크카드 운용 방식
- 별도의 전용 계좌 운용

### <표 6-4> 체크카드 운용방식

- 발급방법
  - 지원 자격을 획득한 장애인의 신청에 의함
  -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발급
- 이용방법
  - 이용 장소
    - 적극적 지정방식: 서울시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지원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
    - 소극적 제외방식: 술과 담배 등 구매 제외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제외하는 방식
  - 이용 방법
    - 서울시와 이용자 간 체결한 지원계획서에 따라 이용하고, 지원금액 내에서 결제
- 이용한도 관리
  - 정해진 정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의 첫 일에 금액이 생성됨
  - 미사용 금액에 대한 이월
    - 한도 소멸 방식
    - 전액 이월 방식
    - 1개월 분(또는 특정 비율)만 이월하는 방식
- 이용 절차
  -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서비스 이용 후 지원계획서대로 결제(결제금액 변동 시 사유 기록)
  - 가맹점은 결제 단말기, PC승인프로그램, 모바일 승인프로그램을 통해 승인요청
  - 거래승인 완료
  - 매출전표 제공(추후 정산에 사용)
- 기관 지정 방법
  - 연구결과 모형에 따라 결정됨

- 잔액확인 등 정보제공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사용 내역 및 잔액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 적극적 지정방식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카드 분실신고 등
  - 카드 단말기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 2) 급여의 내용(서비스 통합 정도)

- 아동중심의 서비스는 보호와 양육을 중심으로 하고,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등을 서비스 시스템에 통합하며, 아동보육서비스와 세밀하게 연계되도록 함. 성인중심의 서비스는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고, 기존의 활동지원서비스, 주간활동서비스(발달재활), 보조기구서비스 등을 서비스 시스템에 통합함
- 또한 이 외에 기존 사회서비스가 아닌 서비스 및 재화를 통합하고 유연화함
- 이후 거주시설서비스와 장애인복지관의 상당부분 서비스(개별귀속성이 높은 서비스)도 포괄하고, 이들 서비스의 진입점을 활동지원제도 이용을 위한 진입점으로 통합함

## 3) 용도 및 용처의 제한정도

- 용도, 용처 제한 없음
- 도박, 술, 담배 등 윤리에 반하는 품목에 대한 사용금지
-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의식주 품목에 사용금지(소득보장과의 차별성)

## 바. 집행(activity)

### 1) 활동보조인 고용방식

- 혼합방식
-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기관 중개와 직접 고용을 선택 활용
-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면 기관에서 활동보조인 연계
- 이용자가 광고 등을 통해 활동보조인 모집 및 계약

### 2) 활동보조 단가산정 방법

- 직접고용의 경우 자율 계약 방식, 기관 고용의 경우 활동보조 단가 적용

-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사이의 자율계약에 의하며, 다른 서비스의 경우 실제 비용 지불

### 3) 활동보조인의 범위

- 가족까지 범위 확대
- 이 경우에도 현행 체계에서는 활동보조인 자격은 필요함
- 가족의 범위: 모든 가족
- 가족의 경우 직접고용은 불가능하고, 중개기관을 통한 연계만 가능하도록

### 4) 계좌관리 방법(정산지원 포함)

- 혼합 방식
- 예산의 일정부분은 직접 관리, 나머지 일정 부분은 당사자가 지정한 재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활용
- 당사자(이용자) 권한통제에 따라 당사자 집행
- 당사자 권한통제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재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집행

## 사. 정산(사용내역과 영수증 제출)

### 1) 예산집행기간(지원계획의 시행기간)

- 1년, 6개월, 3개월 중 이용자가 선택 가능

### 2) 정산기간

- 예산집행기간과 동일

### 3) 정산의 정도

- 100% 정산

## 아. 성과평가 및 서비스 질에 대한 품질관리

### 1) 성과평가 방법

-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 이용자 표집 후 사업평가
- 개인별 성과평가 (외부 실행)

개인의 성과평가 (자기 평가) - 정산 시 자기기입식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 2) 품질관리 방법

제공기관 평가 후 정보 공개 + 이용자 평가

## 자. 전체 절차에 포괄하는 쟁점

### 1) 소득보장과의 관계

소득보장 포함하면 안 됨

이어지면 안 됨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의식주 품목에 사용금지

### 2) 재원

기금 : 몇 개 항목을 모아서 기금으로 설치

### 3) 옹호조직 지정

지원계획 작성, 재정관리(계좌관리 및 정산) 지원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이용과정의 옹호 및 지원서비스 제공

정보제공, 상담, 모니터링 등 옹호 및 지원서비스 제공

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주도 조직 지정위탁(시군구별 1개소)

## 2. 모형의 장점 및 단점

### 가. 장점

모형의 장점은 앞서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 및 자기주도지원의 개념에서 살펴보았듯이, 장애인들의 선택권 증대가 가능하고 이에 따라 당사자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당사자들의 정치적 지지에 따라 정책의 집행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보면 일단 예산 증액이 필요 없다.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는 서비스의 목록이나 지원 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 증액과는 무관하다. 물론 전달체계 개편에 의해 지원시스템 구축 등을 위한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예산을 통제하여야 하는 정부차원에서는 정치적으로 중립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는 본인이 필요한 욕구를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향후 욕구 확대에 따라 필요한 예산 증액의 보다 쉽게 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나. 단점

첫째, 사회복지사업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현행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을 보면 현물 제공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용권은 제공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서비스에 대한 현금지급 조항이 없기 때문에 현금을 지급할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여러 시도에서 현금카드를 활용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볼 수 있다.

**<표 6-5> 모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법률(1)**

참고>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서비스 제공의 방법) ① 보호대상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은 현물(現物)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제1항의 서비스 제공을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서비스 제공을 받게 할 수 있다.

둘째, 국가재정법 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전용) 및 제46조(예산의 이용·이체)에 따라, 세항 및 목간 예산을 통합하거나 변경하려면 전용 사유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항 간의 상호 이용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결국 원칙 적으로 상호 이용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항별로 규정된 급여의 재정을 합쳐서 제공한다는 것은 현행 국가재정법 위반일 수 있다.

셋째, 기존 활동보조제도를 현금으로 바꿀 경우 활동보조인 외에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는데,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불가능하다. 현행 법률대로 하다보면 현행 급여체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가 발생한다. 즉 바우처로 지급하는 대신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 이상이 아닐 수 있게 된다.

**<표 6-6> 모형의 장점 및 단점에 대한 법률(2)**

참고>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활동지원급여의 종류 등) ① 이 법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보조: 활동지원인력인 제27조에 따른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는 활동지원급여
2. 방문목욕: 활동지원인력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3. 방문간호: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활동지원급여
4.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 야간보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지원급여

넷째, 중앙정부 예산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재경부 및 보건복지부의 간섭 및 마찰 가능성이 존재한다. 중앙정부 예산이 투입하면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수정·변경하는 것을 쉽게 용인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의 시범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간섭이 많아질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 시범사업은 서울시 자체예산을 활용하여 별도의 기금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구분한 후 현금카드를 활용하는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 VII.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모형개발

일반적인 개인예산제도 모형을 개발했지만,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에서 시행하기에는 몇 가지 장애물이 존재하기 때문에,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 도입 가능한 모형을 개발했다.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큰 장애물은 서울시 자체 예산에 한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체예산을 사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형을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여 시행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고, 또한 추가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활동지원제도를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로 이용할 수 있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모형은 새로운 예산을 투입하여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지원예산을 활용하는 모형과 기존 서울시 추가 활동지원을 받던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서울시 추가급여를 자기주도지원예산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형을 개발하였다. 서울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모델을 발달장애인에 한정하여 개발한 이유는,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가 개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존중하고자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현재 자기결정권 제한이 가장 심하다고 여겨지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은 향후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가 실제로 자기결정권 및 선택권을 향상시켰는지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형은 향후 기존 제도와의 효과성 등을 비교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 1.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 1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 1은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자기주도적 지원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른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7-1>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 1의 시행절차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이용자 - 서울시 (서울시, 구청)	신청주체	1차)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후견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 2차) 직권신청
		신청방법	<input type="checkbox"/>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등), 우편, 전화, 팩스
		신청자격	<input type="checkbox"/>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신청접수기관 (관리기관)	<input type="checkbox"/> 서울시(서울시, 구청)
		신청 - 결과통지소요기간	<input type="checkbox"/> 1개월
서비스 자격평가 및 예산 산정	서울시	자격평가 주체기관	<input type="checkbox"/> 서울시 직접
		평가도구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 서비스 접근 정도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독자적 기준 마련

구분	주체	내용	
		예산산정 방법	<input type="checkbox"/> 장애정도 등에 따른 일정 금액 기준 적용 <예시> 자해, 타해성 심각, 기존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그룹 - 50만원 경증의 발달장애로 서비스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려운 그룹- 20만원 등
↓			
지원계획 작성	이용자 - 서울시 지원기관	지원계획 작성방법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작성방법  지원계획 지원 기관 및 개인 범위	<input type="checkbox"/> 개인(지원포함)이 작성하거나 지원기관에서 이용자 상담과 동의를 통해 지원계획 수립  <input type="checkbox"/> PCP활용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발달장애인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지원기관
↓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 - 서울시 (서울시, 구청)	계약서 내용  대리인 범위 및 지정방법	<input type="checkbox"/> 절차에 포함된 기본적인 내용, 예산 허용 범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 등 포함  <input type="checkbox"/> 가족을 대리인을 인정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시범 적용 가능)
↓			
급여제공	서울시 (서울시, 구청) ↓ 이용자	급여의 형태  급여의 내용  용도·용처 제한정도	<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 지급(별도의 전용계좌 필요)  <input type="checkbox"/> 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비사회서비스(여행, 여가, 체육 문화, 이동, 활동을 위한 가사제품, 편의시설개조, 안마서비스 등)  <input type="checkbox"/> 용도·용처 제한 없음 <input type="checkbox"/> ○ 도박, 술, 담배 등 윤리에 반하는 품목 사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 사회활동과 미 연계된 의식주 품목 사용금지
↓			
집행	이용자	활동보조인 고용방식  활동보조인 단가산정 방법  활동보조인 범위  계좌관리방법 (정산지원포함)	<input type="checkbox"/> 혼합(직접고용+기관연계고용)  <input type="checkbox"/> 직접고용의 경우 자율계약방식, 기관고용의 경우 기존 활동보조 단가 적용  <input type="checkbox"/> 모든 가족 고용 가능 * 단, 가족 활동보조인의 경우 직접고용 불가, 기관 연계 고용만 가능  <input type="checkbox"/> 혼합(직접관리 또는 일정 부분 이용자가 지정한 재정관리 서비스 기관 위탁 관리)
↓			
정산	이용자 ↓ 구청	예산집행기간  정산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input type="checkbox"/> 매월

구분	주체	내용	
		정산의 정도	<input type="checkbox"/> 급여비용 100% 정산
성과 평가 및 품질관리	구청 - 외부 평가기관	성과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개인별 성과평가 (외부 평가, 당사자 자기 평가)
		품질관리방법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평가
전체 절차에 관한 포괄 쟁점	<input type="checkbox"/> 소득보장과의 관계 : 소득보장 미포함 저축 불인정 사회활동과 미 연계된 의식주 비용 사용 불가		
	<input type="checkbox"/> 재원마련 : 서울시 예산(조세-항목)		
	<input type="checkbox"/> 옹호조직 지정 : 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조직 지정 또는 장애인복지관 권익옹호팀 등의 권익옹호기관을 지정(권역별 4-5개소)		

## 가. 신청 및 접수

### 1) 신청주체

(1차) 본인+대리인(가족)+후견인

(2차) 직권신청

### 2)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홈페이지) 신청+우편 신청+전화 신청

### 3) 신청자격

기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 만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

기존 국고보조 및 지방이양 서비스 이용자를 배제하고, 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사람으로 한정

### 4) 신청접수기관(관리기관)

서울시(서울시, 구청)

### 5) 신청 후 결정과정통보까지의 소요기간

1개월

## 나. 사회서비스 자격(eligibility) 평가 및 예산 산정

### 1) 자격평가의 주체(기관)

- 서울시에서 직접 평가

## 2) 평가도구

- 독자적 기준 마련 - 장애 정도, 서비스 접근성 등에 따른 기준 마련
  - 자해, 타해성이 심각하여 기존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그룹(A그룹)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접근성도 확보되어 있으나 가족의 결정으로 장애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그룹(B그룹)
  - 경증의 발달장애라 서비스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려운 그룹(C그룹)
- 향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를 기반으로 하고, 개인별 욕구와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독자적인 기준 마련<sup>36)</sup>

## 3) 예산산정 방법

- 장애 정도에 따라 일정 금액의 기준 적용
  - 자해, 타해성이 심각하여 기존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그룹(A그룹) - 50만원
  -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접근성도 확보되어 있으나 가족의 결정으로 장애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그룹(B그룹) - 30만원
  - 경증의 발달장애라 서비스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려운 그룹(C그룹) - 20만원

## 다. 지원계획(support plan) 작성

### 1) 지원계획 작성방법

- 전적으로 개인(지원 포함)이 작성: 지원자 또는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또는 지원 없이, 개인이 작성 또는 지원기관에서 작성하고 개인이 동의: 이용자와의 상담을 통해 지원자 또는 지원기관이 지원계획을 작성

### 2)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작성도구(PCP 활용방안)

- PCP활용

### 3) 지원계획서 작성 지원기관 또는 지원자의 인정범위

- 공공기관(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

36) 자격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지만, 서울시 자체 기준 또는 전국 수준 사업이 될 때의 기준은 1차 시범사업 결과를 모니터링 하면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기관

## 라.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와 지방정부)

### 1) 계약서의 내용

포함된 기본적인 내용

예산 허용 범위: 술, 도박, 사행성 서비스 및 품목의 구입 불가능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 삽입 필요

### 2) 대리인의 범위 및 지정방법

계약 당사자?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가족을 대리인으로 인정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시범적 적용 가능)

## 마. 급여 제공

### 1) 급여의 형태

체크카드 운용 방식

별도의 전용 계좌 운용

발급방법

○ 지원 자격을 획득한 장애인의 신청에 의함

○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발급

이용방법

○ 이용 장소:

- 적극적 지정방식: 서울시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지원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

- 소극적 제외방식: 술/담배 등 구매 제외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제외하는 방식

○ 이용 방법

- 서울시와 이용자간 체결한 지원계획서에 따라 이용하고, 지원금액 내에서 결제

이용한도 관리

- 정해진 정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의 첫 일에 금액이 생성됨
- 미사용 금액에 대한 이월
  - 한도 소멸 방식
  - 전액 이월 방식
  - 1개월 분(또는 특정 비율)만 이월하는 방식

이용 절차

-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서비스 이용 후 지원계획서대로 결제(결제금액 변동 시 사유 기록)
- 가맹점은 결제 단말기, PC승인프로그램, 모바일 승인프로그램을 통해 승인요청
- 거래승인 완료
- 매출전표 제공(추후 정산에 사용)

기관 지정 방법

- 연구결과 모형에 따라 결정됨

잔액확인 등 정보제공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사용 내역 및 잔액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적극적 지정방식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카드 분실신고 등
- 카드 단말기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 급여의 내용(서비스 통합정도)**

- 활동지원제도 + 비사회서비스(여행, 여가, 체육 문화, 이동, 활동을 위한 가사제품, 편의시설개조, 안마서비스 등)
- 영역: 술, 담배, 도박 등

### 3) 용도 및 용처의 제한정도

- 용도와 용처: 술집, 편의점, 숙박업소 등 사용불가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가능. 용도, 용처 제한 없음
- 도박, 술, 담배 등 윤리에 반하는 품목에 대한 사용금지
-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의식주 품목에 사용금지(소득보장과의 차별성)
- 가능 사업장: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한 사업장

## 바. 집행(activity)

### 1) 활동보조인 고용방식

- 혼합방식
-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기관 중개와 직접 고용을 선택 활용
-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면 기관에서 활동보조인 연계
- 이용자가 광고 등을 통해 활동보조인 모집 및 계약

### 2) 활동보조 단가 산정방법

- 직접고용의 경우 자율 계약 방식, 기관 고용의 경우 활동보조 단가 적용
-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사이의 자율 계약에 의함. 다른 서비스의 경우 실제 비용 지불

### 3) 활동보조인 범위

- 가족까지 범위 확대
- 이 경우에도 현행 체계에서는 활동보조인 자격은 필요함
- 가족의 범위: 모든 가족
- 가족의 경우 직접고용은 불가능하고, 중개기관을 통한 연계만 가능하도록

### 4) 계좌관리 방법(정산지원 포함)

- 혼합 방식



예산의 일정부분은 직접 관리, 나머지 일정 부분은 당사자가 지정한 재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활용

당사자(이용자) 권한통제에 따라 당사자 집행

당사자 권한통제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재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집행

## **사. 정산(내역과 영수증 제출)**

### **1) 예산집행기간(지원계획서 시행기간)**

시범사업 기간

모든 이용자에게 6개월 적용

### **2) 정산기간**

매월

### **3) 정산의 정도**

100% 정산

## **아. 성과평가 및 서비스 질에 대한 품질관리**

### **1) 성과평가 방법**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 이용자 표집 후 사업평가

개인별 성과평가 (외부 실행)

개인의 성과평가 (자기 평가) - 정산 시 자기기입식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 **2) 품질관리 방법**

이용자 평가: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평가

## **자. 전체 절차에 포괄하는 쟁점**

### **1) 소득보장과의 관계**

소득보장 포함하면 안 됨

저축으로 이어지면 안 됨

□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의식주 품목에 사용금지

2) 재원

□ 조세-항·목: 서울시의 경우 초기 적용에 편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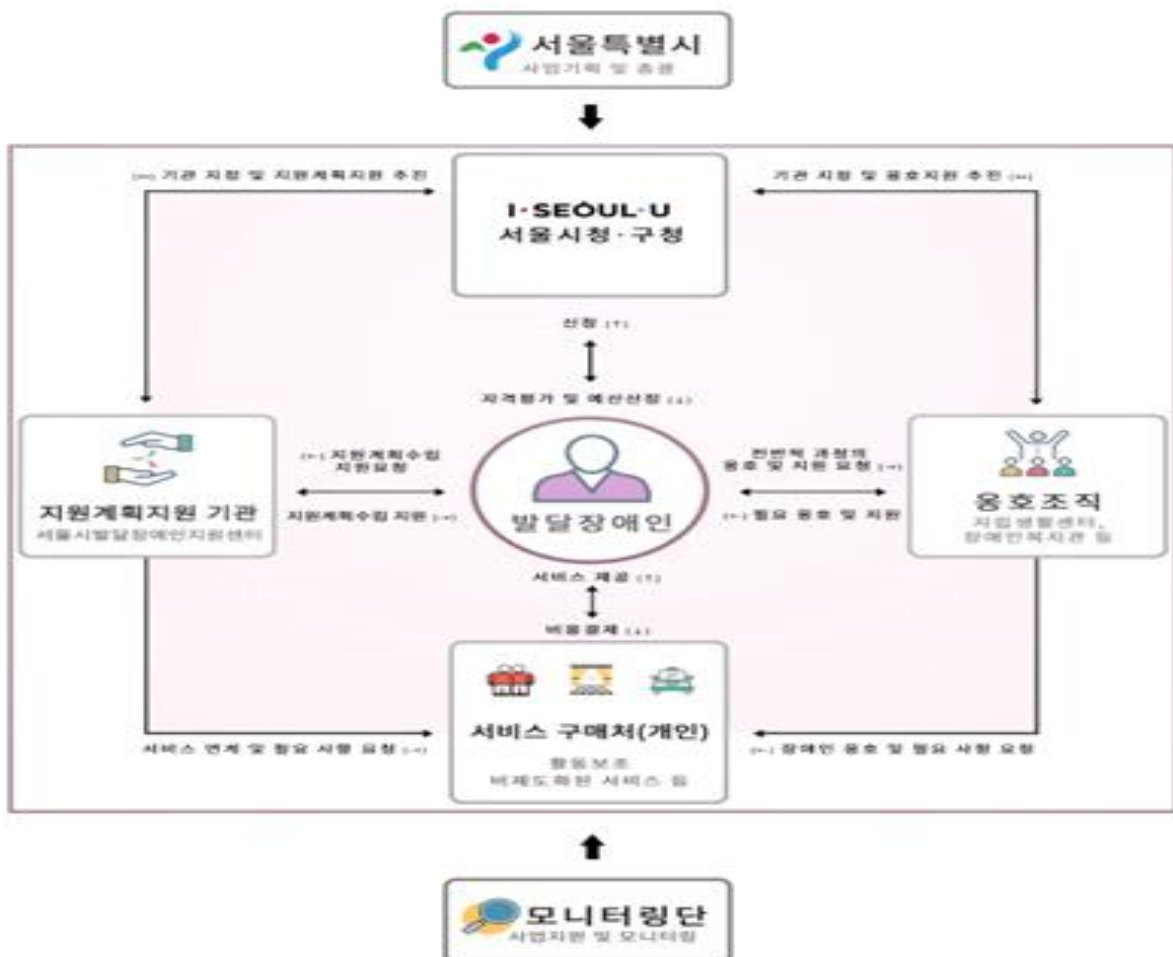
3) 옹호조직 지정

□ 지원계획작성, 재정관리(계좌관리 및 정산) 지원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이용과정의 옹호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정보제공, 상담, 모니터링 등 옹호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자립생활센터 중 지정위탁 + 장애인복지관의 권익옹호팀 등 권익옹호 기관을 새로운 옹호조직으로 지정(권역별, 총 4-5개)

[그림 7-1]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 1



## 2.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 2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 2는 기존에 서울시로부터 활동지원급여를 추가적으로 받고 있던 지체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지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른 시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표 7-2> 서울시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 2의 시행절차

구분	주체	내용	
신청 및 접수	이용자 - 서울시 (서울시, 구청)	신청주체	1차)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 2차) 직권신청
		신청방법	<input type="checkbox"/> 방문, 온라인(홈페이지 등), 우편, 전화, 팩스
		신청자격	<input type="checkbox"/> 서울시 추가급여로 활동보조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체장애인
		신청접수기관 (관리기관)	<input type="checkbox"/> 서울시(서울시, 구청)
		신청 - 결과통지소요기간	<input type="checkbox"/> 1개월
서비스 자격평가 및 예산 산정	서울시	자격평가 주체기관	<input type="checkbox"/> 서울시 직접
		평가도구	<input type="checkbox"/> 기존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예산산정 방법	<input type="checkbox"/> 기존 활동지원제도 예산 산정방식 준용, 할당된 서비스 량 반영
지원계획 작성	이용자 - 지원계획 지원기관	지원계획 작성방법	<input type="checkbox"/> 개인(기관 및 개인 지원포함)이 작성
		지원계획 지원 기관 및 개인 범위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이용자를 잘 아는 개인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 - 서울시 (서울시, 구청)	계약서 내용	<input type="checkbox"/> 절차에 포함된 기본적인 내용, 예산 허용 범위,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 등 포함
		대리인 범위 및 지정방법	<input type="checkbox"/>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
급여제공	서울시 (서울시, 구청) ↓ 이용자	급여의 형태	<input type="checkbox"/> 체크카드 지급(별도의 전용계좌 필요)
		급여의 내용	<input type="checkbox"/> 활동보조 <input type="checkbox"/> 비사회서비스(여행, 여가, 체육 문화, 이동, 활동을 위한 가사제품, 편의시설개조, 안마서비스 등)
		용도·용처 제한정도	<input type="checkbox"/> 용도·용처 제한 없음 <input type="checkbox"/> 도박, 술, 담배 등 윤리에 반하는 품목 사용 금지 <input type="checkbox"/> 사회활동과 미 연계된 의식주 품목 사용금지
집행	이용자	활동보조인 고용방식	<input type="checkbox"/> 혼합(직접고용+기관연계고용)

구분	주체	내용	
		활동보조인 단가산정 방법	<input type="checkbox"/> 직접고용의 경우 자율계약방식, 기관고용의 경우 기존 활동보조 단가 적용
		활동보조인 범위	<input type="checkbox"/> 모든 가족 고용 가능 * 단, 가족 활동보조인의 경우 직접고용 불가, 기 관 연계 고용만 가능
		계좌관리방법 (정산지원포함)	<input type="checkbox"/> 혼합(직접관리 또는 일정 부분 이용자가 지정한 재정관리 서비스 기관 위탁 관리)
↓			
정산	이용자 ↓ 구청	예산집행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정산기간	<input type="checkbox"/> 매월
		정산의 정도	<input type="checkbox"/> 급여비용 100% 정산
↓			
성과 평가 및 품질관리	구청 - 외부 평가기관	성과평가방법	<input type="checkbox"/>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개인별 성과평가 (외부 평가, 당사자 자기 평가)
		품질관리방법	<input type="checkbox"/> 이용자 평가
전체 절차에 관한 포괄 쟁점	<input type="checkbox"/> 소득보장과의 관계 : 소득보장 미포함 저축 불인정 사회활동과 미 연계된 의식주 비용 사용 불가		
	<input type="checkbox"/> 자원마련 : 서울시 예산(조세-항목)		
	<input type="checkbox"/> 옹호조직 지정 : 자립생활센터 등 당사자 조직 지정 위탁(권역별 4-5개소)		

## 가. 신청 및 접수

### 1) 신청의 주체

(1차) 본인+본인이 지정한 대리인

(2차) 직권신청

### 2) 신청방법

방문신청+온라인(홈페이지) 신청+우편 신청+전화 신청+팩스 신청

### 3) 신청자격

서울시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받음으로써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

### 4) 신청접수기관(관리기관)

서울시(서울시, 구청)

5) 신청 이후 결정결과통지까지의 소요기간

- 1개월

**나. 사회서비스 자격(eligibility) 평가 및 예산 산정**

1) 자격평가의 주체(기관)

- 서울시에서 직접 평가

2) 평가도구

- 기존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활용. 서울시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

3) 예산 산정방법

- 기존 제도(활동지원 등)의 예산 산정 방식 준용. 기존 제도의 서비스 급여량 반영

**다. 지원계획(support plan) 작성**

1) 지원계획서 작성방법

- 전적으로 개인(지원 포함)이 작성: 지원자, 지원기관의 지원을 받아서, 지원 없이, 개인이 작성

2) 발달장애인 지원계획 작성도구(PCP 활용방안)

- PCP 활용

3) 지원계획서 작성 지원기관 또는 지원자의 인정범위

- 공공기관과 비영리법인 지원기관 + 이용자를 잘 아는 개인

**라. 지원계획 합의 (이용자와 지방정부)**

1) 계약서의 내용

- 절차에 포함된 기본적인 내용
- 예산 허용 범위: 술, 도박, 사행성 서비스 및 품목의 구입 불가능
- 의무 불이행에 따른 제재방법 삽입 필요

2) 대리인의 범위 및 지정방법

- 계약 당사자? 대리인 지정이 필요한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에 한정

## 다. 급여 제공

### 1) 급여의 형태

- 체크카드 운용 방식
- 별도의 전용 계좌 운용
- 국고보조 부분은 현행대로 이용하고, 서울시 추가 부분에 대해서만 바우처 사용을 배제하고 대신에 개인예산제로 전환하여 운영
- 서울시 추가부분에 대하여 일정 부분 할인율을 적용하여 모든 이용자가 모두 개인예산제도 전환되지 않도록 함(기존 활동지원 제공기관 보호)
- 발급방법
  - 지원 자격을 획득한 장애인의 신청에 의함
  -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발급
- 이용방법
  - 이용 장소:
    - 적극적 지정방식: 서울시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지원기관으로 승인받은 기관
    - 소극적 제외방식: 술/담배 등 구매 제외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업체를 제외하는 방식
  - 이용 방법
    - 서울시와 이용자간 체결한 지원계획서에 따라 이용하고, 지원금액 내에서 결제
- 이용한도 관리
  - 정해진 정산기간(1개월, 3개월, 6개월, 1년)의 첫 일에 금액이 생성됨
  - 미사용 금액에 대한 이월
    - 한도 소멸 방식
    - 전액 이월 방식

- 1개월 분(또는 특정 비율)만 이월하는 방식

이용 절차

- 이용자는 가맹점에서 서비스 이용 후 지원계획서대로 결제(결제금액 변동 시 사유 기록)
- 가맹점은 결제 단말기, PC승인프로그램, 모바일 승인프로그램을 통해 승인요청
- 거래승인 완료
- 매출전표 제공(추후 정산에 사용)

기관 지정 방법

- 연구결과 모형에 따라 결정됨

잔액확인 등 정보제공 방법

-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별 사용 내역 및 잔액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

적극적 지정방식의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 카드 분실신고 등
- 카드 단말기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대처방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 급여의 내용(서비스 통합정도)**

- 활동지원제도 + 비사회서비스(여행, 여가, 체육 문화, 이동, 활동을 위한 가사제품, 편의시설개조, 안마서비스 등)

- 영역: 술, 담배, 도박 등

**3) 용도 및 용처의 제한정도**

- 용도와 용처: 술집, 편의점, 숙박업소 등 사용불가 용도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에서 가능. 용도, 용처 제한 없음

- 도박, 술, 담배 등 윤리에 반하는 품목에 대한 사용금지

-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의식주 품목에 사용금지(소득보장과의 차별성)

- 가능 사업장: 체크카드 사용이 가능한 사업장

## **바. 집행(activity)**

### **1) 활동보조인 고용방식**

- 혼합방식
- 이용자가 원하는 대로 기관 중개와 직접 고용을 선택 활용
- 이용자가 기관을 선택하면 기관에서 활동보조인 연계
- 이용자가 광고 등을 통해 활동보조인 모집 및 계약

### **2) 활동보조 단가 산정방법**

- 직접고용의 경우 자율 계약 방식, 기관고용의 경우 활동보조 단가 적용
- 활동보조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와 활동보조인 사이의 자율 계약에 의함. 다른 서비스의 경우 실제 비용 지불

### **3) 활동보조인의 범위**

- 가족까지 범위 확대
- 이 경우에도 현행 체계에서는 활동보조인 자격은 필요함
- 가족의 범위: 모든 가족
- 가족의 경우 직접고용은 불가능하고, 중개기관을 통한 연계만 가능하도록

### **4) 계좌관리 방법**

- 혼합 방식
- 예산의 일정부분은 직접 관리, 나머지 일정 부분은 당사자가 지정한 재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 활용
- 당사자(이용자) 권한통제에 따라 당사자 집행
- 당사자 권한통제에 따라 당사자가 지정한 재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집행

## **사. 정산**

### **1) 예산집행기간(지원계획의 시행기간)**



시범사업 기간

모든 이용자에게 6개월 적용

## 2) 정산기간

매월

## 3) 정산의 정도

100% 정산

정산: 내역과 영수증 제출

## 아. 성과평가 및 서비스 질에 대한 품질관리

### 1) 성과평가 방법

전체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 이용자 표집 후 사업평가

개인별 성과평가 (외부 실행)

개인의 성과평가 (자기 평가) - 정산 시 자기기입식 성과평가보고서 제출

### 2) 품질관리 방법

이용자 평가 - 만족도 및 삶의 질 향상 평가

## 자. 전체 절차에 포괄하는 쟁점

### 1) 소득보장과의 관계

소득보장 포함하면 안 됨

저축으로 이어지면 안 됨

사회활동과 연계되지 않는 의식주 품목에 사용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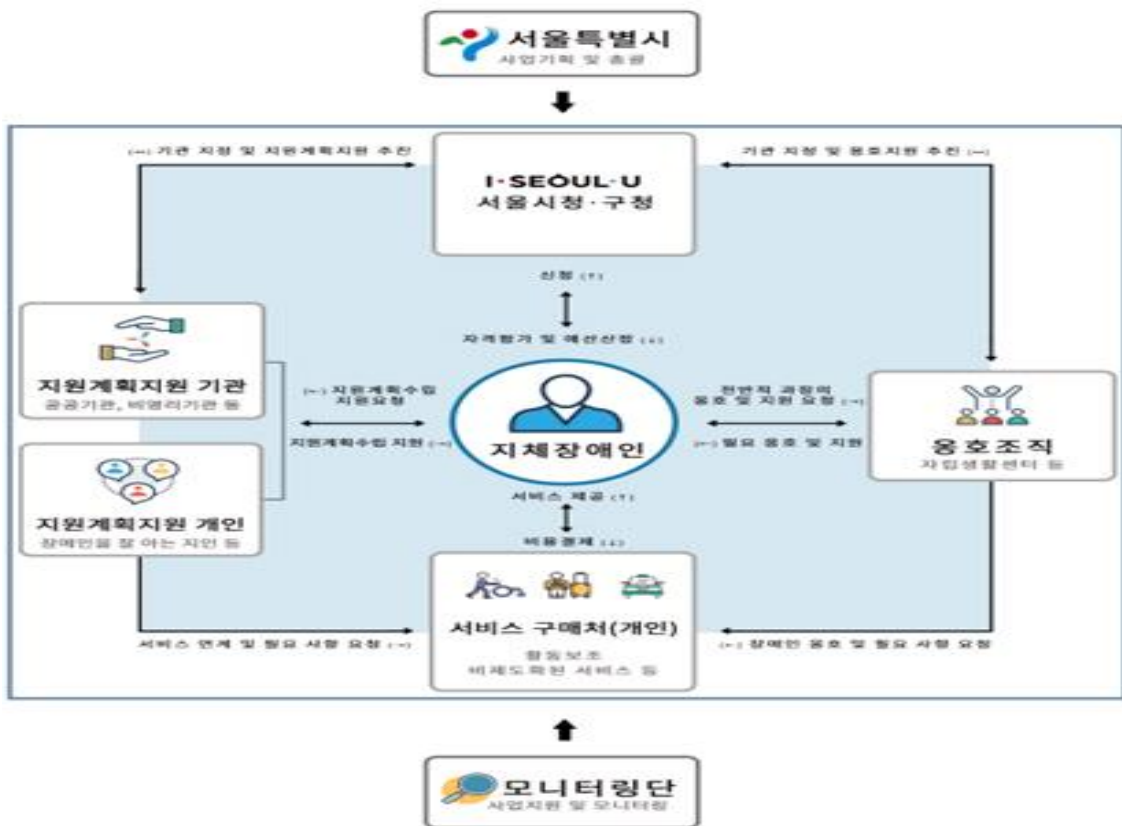
### 2) 재원

조세-항·목 : 서울시의 경우 초기 적용에 편리

### 3) 옹호조직 지정

- 지원계획작성, 재정관리(계좌관리 및 정산) 지원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이용과정의 옹호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정보제공, 상담, 모니터링 등 옹호 및 지원서비스 제공
- 자립생활센터 중 지정위탁(권역별, 총 4-5개)

[그림 7-2]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 2



### 3.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별 장단점 고찰

#### 가. 기존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이 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새로운 서비스 개념으로 독자적인 사업이 가능하다. 둘째, 발달장애인의 자립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보건복지부의 활동지원제도 중 활동보조인을 이용하여 활동 지점으로 이동하고,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를 이용하여 활동함으로써, 부모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주간활동지원제도는 이동 시 또는 활동비용 등을 부모에게 의존하여야 한다. 셋째, 효과성의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발달장애인 부모들의 요구 및 만족에 따라 정치적 목소리가 커질 가능성이 존재한다. 넷째,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용이하다. 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에게 추가적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정치적 승인을 받기에 쉬울 수

있다. 다섯째, 쉽게 민간 시장의 서비스까지 이용 확대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학원 등까지도 확대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관련 서비스로 활동보조서비스, 교육(학원), 여가활동 등 낮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존재한다. 첫째, 현금 사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저촉 가능성이 존재한다. 하지만 독단적인 시범사업이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민간시장에서의 거부감이 존재할 수 있고, 또한 시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셋째, 서울시 자체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예산 증액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 추진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넷째, 현금지급 외에 다양한 지원(정보제공 등 중개서비스)이 없다면 효과를 내기 어렵다. 따라서 각종 지원제도가 반드시 동시에 시행되어야 한다.

#### 나. 활동지원 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 대상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이 모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기준적용을 위한 추가적인 행정 필요 없음에 따라 추가적인 행정적 비용 적거나 없을 수 있다. 둘째, 정치적으로 이용자들의 찬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정치적 집행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추가예산이 없어도 된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단점이 존재한다. 첫째, 현금 사용을 명시하지 않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대한 저촉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분들의 경우 대부분 와상 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이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활동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의 효과성이 상당히 제약적일 수 있다.

### 4.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별 재정 추계

시범사업을 위한 재정에는 이용자 지원 예산, 전달체계 관련 예산이 포함된다. 이용자 지원예산은 이용 인원, 1인당 지원 금액, 시범사업 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출될 수 있다. 이용 인원 및 1인당 지원 금액은 각 모형별로 추계가 가능하고, 시범사업 기간은 7개월로 가정하였다. 2017년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1월부터 4월까지의 준비기간으로 모형 정교화, 시범사업 대상 자치구 선정, 관련 공무원 및 인력 교육 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12월에는 사업에 대한 평가 등 사업종료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시범사업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 7개월로 하였다. 시범사업은 서울시 전체에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일단 사업의 효과성 및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4개 권역으로 구분하여 4개 구에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는 반드시 옹호기관(서비스 구매지원, 정산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조직)이 필요하고, 또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개인별지원계획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계획지원기관이 필요하다. 또 시범사업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모니터링 기관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달체계 관련 예산에는 시범사업 수행 자치구에 대한 지원 금액, 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지원계획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 모니터링 기관에 대한 지원 금액이 포함된다.

시범사업에 대한 재정을 추계한 결과, 발달장애인 대상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만을 할 경우 16억 1,7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체장애인 대상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만 할 경우 이용자 지원예산은 기존 예산(8억8천만 원 정도)을 사용하지만 각종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 및 사업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5억 8,100만 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두 가지 모형에 대해 시범사업을 할 경우 지원기관에 대한 지원예산 및 사업예산은 중복 계상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발달장애인 대상 시범사업 비용과 동일한 16억 1,700만 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업의 효과성 및 문제점도 파악하고 그 동안 지원에서 소외되어 왔던 발달장애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 위하여 두 모형을 모두 실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표 7-3>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별 재정 추계

시범사업 구분	예산 구분	예산액 (단위: 천원)	비고
발달장애인 대상	이용자 지원 예산	448,000	신규예산
	전달체계 관련 예산	581,000	신규예산
	<b>합계</b>	<b>1,029,000</b>	신규예산
지체장애인 대상	이용자 지원 예산	883,000	활동지원제도 예산에서 전용
	전달체계 관련 예산	581,000	신규예산
	<b>합계</b>	<b>1,464,000</b>	8억8,300만원은 신규 편성 필요 없음 따라서 신규예산은 5억8천만 원 필요
발달장애인 + 지체 장애인 대상	이용자 지원 예산	1,331,000	지체장애인 지원예산 8억8,300만 원은 활동지원제도 예산에서 전환
	전달체계 관련 예산	581,000	전달체계는 공동으로 사용
	<b>합계</b>	<b>1,912,000</b>	이 중 10억2,900만 원은 신규 편성 필요 8억8,300만원은 활동지원제도 예산에서 전용

## 가.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 1

### 1) 이용자 지원 예산

향후에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를 기반으로 하고, 개인별 욕구와 가족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독자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지만, 시범사업에서는 기존에 여러 이유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한 발달장애인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은 자해, 타해성이 심각하여 기존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발달장애인(A집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접근성도 확보되어 있으나 가족의 결정으로 장애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B집단), 경증의 발달장애라 서비스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C집단)처럼 세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세 집단별 지원 금액은 각각 월 50만원, 30만원, 20만원으로 정하였다. 자해 및 타해가 심하여 기존 제도에 진입하지 못하는 발달장애인의 경우 도전행동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면 다른 지원에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 비용으로 5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또 기존 제도에의 진입이 가능함에도 가족의 결정으로 제도에서 배제된 경우 대부분 본인부담금에 대한 부담, 이동교통비에 대한 부담 등이 높기 때문에 기존 제도에 편입하기 위한 서비스 지원으로 30만 원 정도의 지원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또 경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현재 어떤 서비스에도 진입이 안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활동을 위한 장애인 평균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20만 원 정도의 지원을 통해 사회생활을 보다 촉진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4>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 1의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구분	대상	월 지원 금액
A집단	자해, 타해성이 심각하여 기존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발달장애인	50만원
B집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접근성도 확보되어 있으나 가족의 결정으로 장애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발달장애인	30만원
C집단	경증의 발달장애라 서비스 수급 대상이 되기 어려운 발달장애인	20만원

서울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은 약 1만8천여 명이다. 따라서 서울시 1개 구당 평균 인원은 720명(18,000명/25개구)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 이 중 30% 정도는 기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다양한 연구에서 조사되고 있다(김용득 외, 2013).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는 모든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 등에 따라 각 집단별 이용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해 타해성이 심각하여 기존 제도에 진입하지 못한 발달장애인은 한 자치구당 10명 내외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이고, B집단의 경우에도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를 실행한다고 하여도 다시 제도에 진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 자치구당 10명 내외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C집단의 경우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클 수 있기 때문에 40명 정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 자치구 당 지원예산을 계산해 보면 A집단의 경우 월 500만 원(50만 원 × 10명), B집단의 경우 월 300만 원(30만 원 × 10명), C집단의 경우 월 800만 원(20만 원 × 40명)이 소요된다. 결국 1개 자치구에서 월간 이용자 지원액으로 1,600만 원이 필요하다. 또한 4개 자치구에서 7개월간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총 소요금액은 4억4,800만 원(1,600만원 × 4개 자치구 × 7개월)이 된다.

## 2) 전달체계 관련 지원 예산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자치구에는 1명의 인건비와 사업비용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대략적으로 월 500만 원(300만 원 +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따라서 한 자치구 당 3,500만 원(500만 원 × 7개월) 정도의 지원이 필요하고, 4개 자치구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경우 1억4천만 원(500만원 × 4개 자치구 × 7개월) 정도가 필요하다.

옹호기관, 지원계획지원기관, 모니터링 기관의 경우에도 2명의 인건비와 사업비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1개 기관 당 700만 원(250만 원 × 2 + 200만 원) 정도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옹호기관과 지원계획지원기관은 시범사업 지역별로 4개소가 필요하고, 모니터링 기관은 서울시에 1개 기관만 필요하다. 따라서 옹호기관과 지원계획지원기관은 각각 1억 9,600만 원(700만 원 × 7개월 × 4개소)이 필요하다. 또 모니터링 기관은 4,900만 원(700만 원 × 7개월 × 1개소)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달체계 관련 지원예산 총액은 5억8,100만 원이다.

## 3) 재정 추계

4개 자치구에서 7개월 간 발달장애인 총 240명(한 자치구 당 60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경우, 이용자 지원 예산은 총 4억4,800만 원이고, 전달체계 관련 지원예산은 총5억8,100만 원이다. 이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지원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10억 2,900만 원이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5>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 1의 재정 추계

구분	분류	예산액 (단위: 천원)	추정 근거
이용자 지원 예산	A집단	140,000	50만원 × 10명 × 7개월 × 4개 자치구
	B집단	84,000	30만원 × 10명 × 7개월 × 4개 자치구
	C집단	224,000	20만원 × 40명 × 7개월 × 4개 자치구
	소계	<b>448,000</b>	
전달체계 관 련 예산	자치구 지원	140,000	(인건비 300만원 + 업무추진비 200만원) × 7개월 × 4개 자치구
	옹호기관 지원	196,000	(인건비 250만원 × 2인 + 업무추진비 200만원) × 7개월 × 4개 기관
	지원계획지원기관 지원	196,000	(인건비 250만원 × 2인 + 업무추진비 200만원) × 7개월 × 4개 기관
	모니터링기관 지원	49,000	(인건비 250만원 × 2인 + 업무추진비 200만원) × 7개월 × 1개 기관
	소계	<b>581,000</b>	
<b>합계</b>		<b>1,029,000</b>	

## 나.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 2

이 모형은 서울시로부터 자체 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는 사람들 중 본인이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를 선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 4개구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7년 서울시 추가지원 현황을 알아보고, 이 중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는 서비스 이용자 수를 추정하여 올해 추가지원 예산 중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재정의 양을 추계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을 위해서는 전달체계 구축에 예산이 필요하다. 이 예산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에서 추계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추계 결과 서울시가 추가지원하고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중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예산은 8억8,300만 원이며,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필요 예산은 5억8,100만 원이다.

### 1) 활동지원제도 서울시 추가지원 중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예산의 양

서울시는 장애 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등 6개 지원 분류 대상자에 대해 자체예산을 통해 추가적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7년 서울시 자체예산을 통해 추가 지원한 인원은 총 2,234명이었으며, 이에 소요된 예산은 월간 약 25억6천만 원 정도이었다.

**<표 7-6> 2017년 활동지원제도 서울시 추가지원현황**

구분	월급여액 (단위: 천원)	지원자 수 (단위: 명)	월간 지원예산액 (단위: 천원)
장애 1급 중 인정점수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독거로 24시간 지원 선정자	3,234 (350시간)	92	297,528
장애 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인 와상 사지마비 1인 가구	1,848 (200시간)	349	644,952
장애 1급 중 인정점수가 400점 미만인 와상 사지마비 1인 가구	1,109 (120시간)	95	105,355
장애 1급 중 와상 사지마비 국비 1등급	924 (100시간)	1,604	1,482,096
장애1급 (인정점수 200점-220점)	360 (40시간)	62	22,320
시설 퇴소자 (적격자 심의선발)	278 (30시간)	32	8,896
<b>합계</b>		<b>2,234</b>	<b>2,561,147</b>

따라서 추가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모두 시범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5개 구 중 4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범사업을 하기 때문에 2,234명 중 4/25에 해당하는 360명 정도가 시범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만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희망 인원을 추산할 수밖에 없다. 현재 추가지원을 받는 장애인들이 모두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를 희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시범사업 이후에 다시 원래 지원형태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불안감, 번거로움 등에 의해 신청자가 많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대상 인원 중 약 30% 정도가 신청을 할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은 110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2018년 서울시 추가지원 활동지원제도 예산 중 지체장애인 대상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한 예산은 총 8억8,300만 원(2,561,147,000원 ÷ 2,234명 × 110명 × 7개월) 정도로 추정할 수 있다.

## 2) 전달체계 관련 지원 예산

시범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달체계 관련 지원예산은 발달장애인 대상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에서의 전달체계와 동일하기 때문에 앞서 추계한 자료를 사용하면, 전달체계 관련 지원예산 총액은 5억 8,100만 원이다.

## 3) 재정 추계

4개 자치구에서 7개월 간 지체장애인 총 110명(한 자치구 당 28명 정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할 경우, 이용자 지원 예산은 총 8억8,300만 원(2,561,147,000원 ÷ 2,234명 × 110명 × 7개월) 이고, 전달체계 관련 지원예산은 총 5억8,100만 원이다. 이 중 이용자 지원 예산은 기존 활동지원제도 서울시 추가지원분에서 전환을 하면 되고, 전달체계 관련 지원예산은 신규 편성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지체장애인 대상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지원 시범사업에 필요한 예산은 총 14억 4,640만 원이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7>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범사업 모형2의 재정 추계

구분	분류	예산액 (단위: 천원)	추정 근거
이용자 지원 예산	서울시 추가지원을 받고 있는 지체장애인	883,000	2,561,147,000원 ÷ 2,234명 × 110명 (4개구 지체장애인 중 약 30% 정도) × 7개월
	소계	<b>883,000</b>	<b>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아니고, 기존 추가지원예산에서 전환 필요</b>
전달체계 관 련 예산	자치구 지원	140,000	(인건비 300만원 + 업무추진비 200만원) × 7개월 × 4개 자치구
	옹호기관 지원	196,000	(인건비 250만원 × 2인 + 업무추진비 200만원) × 7개월 × 4개 기관
	지원계획지원기관 지원	196,000	(인건비 250만원 × 2인 + 업무추진비 200만원) × 7개월 × 4개 기관
	모니터링기관 지원	49,000	(인건비 250만원 × 2인 + 업무추진비 200만원) × 7개월 × 1개 기관
	소계	<b>581,000</b>	
<b>합계</b>		<b>1,464,000</b>	<b>이 중 8억8천만 원은 신규 편성 필요 없고,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5억8,100만원만 필요</b>

#### 다. 시범사업 모형 1과 시범사업 모형 2를 모두 실행하는 모형

이 모형은 발달장애인 대상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와 활동지원 추가급여를 받고 있는 지체 장애인 대상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를 동시에 시행하는 것이다. 이 경우 위의 예산들을 조합하여 추계가 가능하다.

우선 발달장애인 대상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를 위해서는 신규로 이용자지원 예산이 필요하고,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예산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지체장애인 대상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를 동시에 실행하는 경우 이용자지원 예산은 기존 활동지원 추가예산에서 전용하는 것이고, 전달체계는 발달장애인 대상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의 전달체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필요 없다. 따라서 이 모형에서 신규로 필요한 예산은 발달장애인 이용자지원 예산 4억4,800만 원과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은 5억8,100만 원이 필요하다. 결국 신규예산은 10억 2,900만 원이 필요하고, 이와 더불어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중 8억 8,300만원이 시범사업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종합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7-8> 시범사업 모형1과 시범사업 모형2를 동시 시행할 경우의 재정 추계

구분	분류	예산액 (단위: 천원)	추정 근거
이용자 지원 예산	발달장애인	448,000	신규 예산
	지체장애인	883,000	활동지원제도에서 전용할 예산
	<b>소계</b>	<b>1,331,000</b>	
전달체계 관 련 예산	자치구 지원	140,000	(인건비 300만원 + 업무추진비 200만원) × 7개월 × 4개 자치구
	옹호기관 지원	196,000	(인건비 250만원 × 2인 + 업무추진비 200만원) × 7개월 × 4개 기관
	지원계획지원기관 지원	196,000	(인건비 250만원 × 2인 + 업무추진비 200만원) × 7개월 × 4개 기관
	모니터링기관 지원	49,000	(인건비 250만원 × 2인 + 업무추진비 200만원) × 7개월 × 1개 기관
	<b>소계</b>	<b>581,000</b>	
<b>합계</b>		<b>1,912,000</b>	<b>이 중 10억2,900만 원은 신규 편성 필요 8억8,300만원은 활동지원제도 예산에서 전용</b>

## Ⅷ.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자기주도지원의 한 형태인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개념, 필요성, 각국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개인예산제도 일반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일반 모형의 장단점과 서울시에서 적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어려움 등을 살펴봄으로써,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적용할 수 있는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복지서비스 제공방식은 국가가 미리 복지서비스와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정해 놓고 장애등급 등 일정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한 후 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장애인 당사자들은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후 자신이 원하는 복지 서비스를 선택하여 이용함으로써, 선택과 통제권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지원의 필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자기주도지원(self-directed support)은 개인이 더 많은 선택과 통제권을 갖도록 하기 위해 이용자 자신이 본인의 지원을 지시 또는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는 자립생활모형을 제도화한 것이다. 즉 자립생활모형에 따라 지원을 받되 그 지원을 당사자가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한데,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는 이를 실천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형으로 평가받고 있다. 왜냐하면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후 자신의 계획 하에서 지원서비스를 선택,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는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인 평등의 가치와 더불어 자유의 가치를 동시에 올리기 위해 필요하다. 평등을 높이기 위해 재분배를 위한 노력을 했지만, 이용자들이 이류시민이 되고, 지원을 통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기는 하지만 주는 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시민과 동등하게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는 복지체계가 필요했고, 이에 맞춘 것이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처럼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는 이용자를 수혜자가 아닌 동등한 시민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필요하다. 결국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는 자원할당의 주체를 공공이 맡고, 공급자는 옹호와 중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은 선택과 통제권을 가지면서 시민이 되고, 서비스는 표준화에서 벗어나 유연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도입을 검토해 보고자, 이 연구는 해외 6개국 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한 형태인 개인예산제도의 일반 모형을 개발하였다. 자기주도성을 높이고 서비스를 보다 유연화하고 장애인이 시민이 될 수 있도록 모형을 개발하였다. 하지만 일반 모형은 전국 단위 사업으로는 가능하나, 서울시만의 모형으로는 부적절함이 나타났다. 왜냐하면 국가재정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서비스를 유연화하는 것이 쉽지 않음이 발견되었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서비스의 경우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자체 예산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시범사업 모형을 개발하였다. 우선 그 동안 장애인복지서비스에서 소외되어 왔고, 또한 자기결정 등 자기주도적인 지원을 받지 못해왔던 성인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제도 이용자를 대상으로 자기주도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 모형은 기존 서비스와의 비교도 가능한 장점이 있다.

하지만 개인예산제도를 포괄하는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는 사회혁신이라 불릴 정도로 대대적인 복지체계의 개편을 필요로 한다. 특히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놓지 않으려는 전문가들의 반발이 예

상된다. 또한 서비스 통제권을 주장해야 할 주체인 자립생활센터가 바우처를 통해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장애인 운동 단체의 지지를 낙관할 수만은 없다. 결국 혼란을 피하고자 하는 정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전문가와 공급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동기가 높지는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들은 장애인의 선택과 통제권, 자기결정권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장애인들이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그럼에도 우려되는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무조건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 또는 무조건 안 된다는 주장보다는,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도입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실천하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 이에 따라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과제를 문화개선 측면, 시스템 구축 측면, 법률 개정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문화 개선 -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복지문화 또는 복지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다. 우선 이용자를 동등한 시민으로 대우·인정하는 문화가 필요하다. 또한 생존에 필요한 서비스만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도록 복지서비스 제공 또는 사용기준을 변경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기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논쟁에 따른 이분법적 이념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첫째, 국가복지체계에 의한 '재분배 정의'에서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는 정의'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국가들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목격하고 있는 국가의 보호에서 소비자권(consumership, 소비자의 상태) 보장으로의 변화는,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구분과 사회 정책에 대한 새로운 요구를 만들어 내고 있다.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또한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공공 촉진으로 요약되는 개별화와 시장화의 증가에 따라 사회 분배의 문제를 개인적인 책임의 영역으로 이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스칸디나비아 복지 시스템을 특징지었던 복지재분배와 사회 평등에 대한 전통적인 강조는 더 이상 유지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실천 자체에 대한 개념 변화가 필요하다. 기존에는 집합적 재분배(collective redistribution) 정책을 강조함으로써 사회정의를 추구하였다면 개별유연화에 따라 앞으로는 재분배 정책과 더불어 개인적 인정(individual recognition)을 통한 사회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할 경우 개인을 동등한 시민으로 인정하게 되고, 시민이 자신의 선택과 통제권에 따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각종 지원을 국가가 제공하는 방식의 복지실천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개별유연화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는 개인예산을 받은 사람들 또는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명유지 및 생활을 위한 사회적 급부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조금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물품에 대한 구입까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전철을 무료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될 수 있으나 택시를 타는 것은 사치로 여겨질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맞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필요한 모든 물품은 '사회적 필요품(social necessities)'의 개념으로 발전될 필요가 있다(Hohnen, 2006).

셋째, 개별유연화에 대한 지나친 이념논쟁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개인예산제도가 장애인의 권한강화를 추구한다는 반응도 적절치 않고, 또한 신자유주의에 따른 시장화 정책이기 때문에 개인예산제도를 반대하는 것도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다. 서구의 경우 1990년대 이전까지는 양대 이념이 경쟁을 벌였지만 이제는 사회주의의와 초기자본주의의 몰락을 모든 사람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념논쟁보다는 실용성을 더 우위에 두고 있다. 장애인운동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삶의 질, 주체성을 더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분법적 이념논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면서 복지사회를 꿈꾼다면, 그런데 그 방법으로 시장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권리가 증진될 수 있다면, 시장화는 하나의 도구일 따름이다. 장애인의 선택권을 보장을 위한 지원은 공공서비스의 소비자화를 위한 지원이 아니고, 우리 모두 원자화된 개인이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작은 정부를 주장하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서비스 이용자들의 민주적인 참여 없이 설계되고 운영되는 복지 시스템에 대한 집합적인 반대투쟁이다. 개인의 지원 욕구가 어떻게 충족될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본질적으로 장애인을 사회에 위치시키고자 하는 자립생활의 개념에도 완전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예산제도는 자립생활을 증진하고 주류 사회와의 소통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원의 집합적 접근법으로 여겨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적 틀 내에서만 해석된다면 복지의 집합적 책임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한다.

## 2. 시스템 구축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서비스 신청 및 자격부여 창구를 단일화하여야 하고, 지원서비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복지서비스 시장의 공공성 강화 정책이 수반되어야 하고,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이 필요하다.

첫째,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서비스 신청 및 자격기준 부여 창구를 시군구로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 영국은 지방정부 사회서비스국으로 서비스 신청 및 자격기준 부여 창구(entry point)가 단일화됨에 따라 보편적이고 공평한 서비스 접근성이 보장될 수 있었다. 따라서 자기주도지원 예산제를 실행하기 위해 진입창구를 시군구로 단일화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다양한 서비스별로 진입창구가 다르지만, 현재 시군구의 희망복지지원단으로 사례관리가 단일화되는 과정을 겪고 있고, 거주시설, 활동지원제도 등은 이미 시군구로 단일창구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일부 서비스만 시군구로 진입창구를 이전한다면 시행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합리적인 서비스 이용자격 기준(eligibility criteria)이 확립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적 기준에 의한 장애등급으로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자격 기준을 확립하기 어려울 것이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자격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이동석·김용득, 2013).

둘째, 활동지원 인력의 고용, 관리 등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가 부족할 경우 제도 안착이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적절한 예산의 확보, 장애인 스스로의 직접 고용을 지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복지지원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는 이미 자립생활센터, 복지관 등의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어 지원시스템 구축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립생활센터가 어떻게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립생활센터는 동료지원, 정보 제공, 자문 또는 옹호, 훈련, 이용자를 대신해서 임금지급, 직원고용, 직원 등록 등과 같은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이동석·김용득, 2013).

셋째, 복지서비스 시장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하다. 개인예산제 하에서는 지급받은 급여를 통해 서비스 제공자나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 기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기존에 국가가 사례관리자나 지원계획을 통해 이용자를 통제하였다면 통제권한을 이용자에게 과감히 양도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일반 서비스나 재화를 구입하는 자유시장이 되도록

규제를 모두 없애서도 안 된다. 이용자 중심방식은 사회서비스의 전통적인 가치인 책임성과 품질 보장 등을 확보하기 힘든 문제점이 있고, 또한 이용자들에게는 자율성의 확대와 함께 사기, 기만, 학대 등의 위험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이재원, 2008). 따라서 선택기제로서 시장의 기능이 존재하면서도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시장의 속성을 경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단들을 유기적으로 엮어야 한다.

넷째, 이용자 선택을 존중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복지서비스 종사자의 노동환경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도 서비스지원 직원,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는 여성에 대한 착취 가능성이 있다. 특히 현금지급에 따른 경쟁체계에서는 공급자를 황폐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활동보조인 등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노력이 필요하다. 또 이용자의 선택은 종사자의 품격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용자 선택을 위해 공급기관 경쟁은 불가피하지만 복지기관들의 지역사회 연대 의식을 소멸시키는 수준까지 천박한 경쟁으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결국 공급기관은 살아남기 위해 종사자를 최대한 착취하는 본능을 작동시킬 수 있으므로, 이런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평가제도 및 품질관리제도가 필요할 것이다(이동석·김용득, 2013).

다섯째, 가족고용문제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가족화 등 많은 가치들과 연결되어 있다. 하지만 장애인의 선택권 증진과 같은 유연성 확보 차원에서는 가족의 고용을 허용하여 공식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독일현재모형과 영국초기모형을 제외하면 대부분 외국의 경우 배우자, 가족 등 비공식적 돌봄 제공자도 돌봄 제공자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대부분의 돌봄은 여성들의 몫이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가정 밖 노동권을 침해하고 다시 가정에서 노동을 하게 하는 (재)가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비공식적 돌봄 제공의 공식화 방식에 따라, 이용자가 고용관계의 틀 내에서 돌봄에 대해 공식적인 지불을 할 수 있다면 가족화의 우려는 다소 약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 제공을 가능하게 하여도 관리 방식에 따라 가족화 정도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서비스 이용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자립생활 모델의 차원에서 보면, 가족에 대한 고용을 허락하는 경우, 지원과정에 대한 권력과 통제가 가족관계 내에서 이용자에게 완전히 이전될 수 있는지는 의문시 된다. 결국 이용자가 공식적인 고용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지불받은 현금을 사용한다면 권한강화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 의존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공식적인 노동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제도마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으로부터의 독립(independence)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가족을 제공인력에서 제외하기 보다는, 선택지의 하나로 넓혀 놓고 장애인들이 우려하는 사항이 벌어지지 않도록 규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다른 활동지원인력과 마찬가지로 노동계약을 작성하고 노동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그래야만 가족 활동보조인의 권리도 보장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 문제는 가족이 제공할 경우 단가를 낮게 책정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다(이동석, 2017).

### 3. 정부 예산 및 법률의 변화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 체계 및 일부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 재정 내에서의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 늘어나는 직접지불에 맞게 재정을 늘리기 위하

여 정부는 비인기 서비스로부터 돈을 전용하는 재정적 융통성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서비스 시장을 관리하기 위해 장기적인 블록 계약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블록 계약방식은 장기간 고정된 가격에, 합의된 서비스의 일정 수준을 구입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런 방식은 기존 공급자와 시장에 안정을 주고, 정부도 장기적인 계획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방식이기도 하다. 하지만 변화하는 이용자의 욕구에 쉽게 반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서비스를 확대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도전은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적 융통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직접지불제도와 개별화된 예산을 더 사용할수록 기존의 돌봄 시장을 더 불안정하게 할 것이다’라는 우려의 말이 놀랄만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변화하는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추어 재정 항목을 유연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련된 노동자들의 노동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조직 내의 서비스 공급을 없애는 결정도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보다 이용자 친화적으로,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 수 있도록, 재정 내 유연성 강화가 필요하다. 기존 관행처럼 지급되던 시설이나 기관예산을 과감히 줄이고 자기주도지원 예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둘째, 관련 예산의 증대가 필요하다. 다행히 개인예산제를 통해 정부 재정 확대 가능성이 존재한다. 개인예산제도는 아주 투명한 과정으로 개인의 욕구에 재정적인 자원을 연결함으로써, 개인의 욕구를 맞추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돈이 개인에게 이용가능한지 명확하게 설명한다. 충분한 자금이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직면하더라도, 개인들은 최상으로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 알 수 있다. 이런 것들이 투명해짐에 따라, 중앙정부에 지원 자금의 수준을 올려줄 것을 청원할 기회가 증가할 수도 있다. 과거 시스템에서는 얼마만큼의 돈이 이용가능한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개인예산제도 하에서는 더욱 투명해지고 있다(이동석·김용득, 2013). 즉 예전에는 공급자 기관으로 재정이 흘러간 후 어떻게 이용자에게 흘러가는지, 얼마나 흘러가는지, 그래서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없었는데, 개인예산제에 의해 예산의 흐름이 투명해짐에 따라,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이용자들이 보다 명확하게 주장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재정 확보가 가능할 수도 있다.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추동할 수 있는 장애운동도 필요하다.

셋째, 자기주도지원예산제도의 전면 시행 및 확대를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우선 사회복지사업법에서 급여의 형태로 현금을 추가하여야 한다. 또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하여 지정한 항목간에는 전용이 보다 쉽게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급여의 종류를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한정하지 말고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바꿀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김경희·강은애. 2011. “고령화사회의 돌봄노동: 노인 돌봄노동자를 위한 돌봄의 필요성과 정책개선 방안”. 한국사회정책학회 주최 2011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
- 김미혜·이석미. 2007. 독일과 네델란드의 장기요양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현금급여와 가족수발자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Vol, 31. pp
- 김세진. 2012. 네델란드 장기요양보호체계의 특성 및 시사점,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 김영종. 2012.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 32(2): 41-76.
- 김용득·고명균·송남영·장정은·김희정·강민희. 2013. 『2013 전국 성인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조사』. 한국지적장애인복지협회.
- 김용진. 2016. 독일의 장애인 정책-개인예산제, Voice. Vol. 99, DPI KOREA
- 박선영. 2011. “비공식부문 돌봄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방안-간병노동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학회 주최 2011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발표문.
- 석재은. 2006. “장기요양 현금급여 정책의 국가간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58(2): 273-302.
- 안상훈. 2006. “사회서비스투자국가로의 전환논리 - 하나의 비교사회정책학적 서설”.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자료집』, 21-49.
- 원소연. 2010.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실현을 위한 정책연구: 독일의 개인예산제도와 한국의 활동보조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7(2): 267-289.
- 유동철. 2012. “영국 장애인 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정책적 효과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사회적 배제의 관점에서”. 『비판사회정책』 34: 129-162.
- 이동석. 2015. “사회서비스 현금지급제도의 유형에 관한 국가비교연구-퍼지셋 이상형 분석의 적용”. 성공회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이동석. 2017. 이용자 주도성 측면에서의 장애인활동지원제도 분석. 장애인복지연구. 8(1): 1-19.
- 이동석·김용득. 2013. “영국 서비스현금지급과 개인예산제도의 쟁점 및 한국의 도입 가능성”. 『한국장애인복지학』 23: 47-66.
- 이수형. 2009. 네델란드 장기요양제도의 최근동향 및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호수. pp
- 이숙진. 2011. “돌봄노동의 제도화와 여성들의 차이”. 『페미니즘연구』, 11(2): 49-83.
- 이승기·서동명·함석홍·조운화. 2011. 『수요자 중심형 장애인복지 전달체계 모델 개발연구』.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이승기·이성규. 2014. “직접지불제도와 개인예산제도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장애인복지학』 26: 235-249.
- 이재원. 2008. 전자바우처를 활용한 소비자 중심의 사회서비스 공급정책-보건복지가족부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5(3): 1-28.
- 정기혜·김용하·이지현. 2012.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네델란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조남경·김경임. 2014. “성인 돌봄서비스 재정지원 방식과 그 변화의 이해: 스웨덴, 영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6개국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행정학』 16(2): 271-303.
- 조운화·이동석·김용진·김영미. 2016. 『맞춤형서비스를 위한 장애인복지서비스 급여체계 개편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장애인개발원.
- Adams, I. 1998. Ideology and Politics in Britain Today.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 Age UK. 2013. “Fact Sheet 24: self-directed support: direct payments and personal budgets.” London: Age Uk.
- Arkansa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08a. My IndependentChoices handbook.
- Arkansas Department of Human Services. 2008b. IndependentChoices Final Report

- December 1998-March 2008.
- Arksey, H. and Kemp, P. A. 2008. Dimensions of Choice: A Narrative of Cash-for-Care Schemes. Social Policy Research Unit, The University of York.
- Askheim, O. 2003. "Empowerment as guidance for professional social work: an act of balancing on a slack rope". *European Journal of Social Work*, 6(3): 229-240.
- Askheim, O. 2005. "Personal assistance-direct payments or alternative public services. Does it matter for promotion of user control?". *Disability and Society*, 20(3): 247-260.
- Autism Society Los Angeles. 2016. California's New Self-Determination Law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 Barnes, C. and Mercer, G. 1997. *Doing Disability Research*. Leeds: Disability Press.
- Baxter, K., Wilberforce, M. and Glendinning, C. 2011. "Personal budgets and the workforce implications for social care providers: expectations and early experiences". *Social Policy and Society* 10(1), 55-65.
- Benjamin, A. E., Mattias, R., and Franke, T. M. 2000. "Comparing consumer-directed and agency models for providing supportive services at home". *Health Services*, 35(1): 351-366.
-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Ausführung der Leistungen des Persönlichen Budgets nach § 17 des Neunten Buches Sozialgesetzbuch (2006)
- Breda, J., Schoenmaekers, D., Landeghem, C. V., Claessens, D., and Geerts, J. 2006. "When informal care becomes a paid job: the case of personal assistance budgets in Flanders". in Glendinning, C. and Kemp P. A. (eds). *Cash and Care: Policy Challenges in the Welfare State*. Bristol: The Policy Press, 155-170.
-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Referat Information, Publikation, Redaktion, (2014) *Das (trägerübergreifende) Persönliche Budget*
- Carlin, J. and Lenehan, C. 2006. "Overcoming barriers to the take-up of direct payments by parents of disabled children". in Leece, J. and Bornat, J. (eds). *Developments in Direct Payments*. Bristol: Policy Press, 111-122.
- Carlson, B. L., Foster, L., Dale, S. B. and Brown, R. 2007. "Effects of cash and counseling on personal care and well-being". *Health Services Research*, 42(1) part 2: 467-487.
- Carr, S. 2010. *Personalisation: a rough guide* (2nd revised edition). London: SCIE.
- DDS. 2017. *Information About Self-Determination Program*. California: The Department of Developmental Services.
- DeJong, G. 1981. *Environmental Accessibility and Independent Living - Direction for Disability Policy and Research*. University Center for International Rehabili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 Department of Parliamentary Service. 2017. *The National Disability Insurance Scheme: a quick guide*. Parliament of Australia, RESEARCH PAPER SERIES, 2016-17.
- DH. 2003. *Social services performance assessment framework indicators 2002-2003*. London: DH.
- Doty, P., Kasper, J. and Litvak, S. 1996. "Consumer-directed models of personal care: lessons from medicaid", *The Milbank Quarterly*, 74(3): 377-409.
- Duffy, S. 2005. *Keys to citizenship: A guide to getting good support for people with learning disabilities*. Birkenhead: Paradigm.
- Duffy, S. 2010. "The Citizenship Theory of social justice: exploring the meaning of personalisation for social workers." *Journal of Social Work Practice* 24(3), 253-267.
- Elke Decruynaere. 2010. *The Personal Budget(PGB) in the Netherlands*. Expertise Centre



- Independent Living.
- Fernandez, J. L., Kendall, J., Davey, V. and Knapp, M. 2007. "Direct payments in England: factors linked to variations in local provision". *Journal of Social Policy*, 36(1): 97-121.
- Foster, L., Brown, R., Phillips, B., Schore, J. and Carlson, B. L. 2003. "Improving the quality of medicaid personal assistance through consumer direction". *Health Affairs*, Web Exclusive, W3: 162-75.
- Freedman, R. I. and Boyer, N. C. 1999. "The power to choose: supports for families caring for individual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ealth and Social Work*, 25(1): 59-68.
- Gardner, A. 2011. *Personalisation in social work*. Exeter; Learning Matters Ltd.
- Glasby, J. and Littlechild, R. 2009. *Direct Payments and Personal Budgets - putting personalization into practice*. Bristol: Policy Press.
- Glendinning, C. 2013. "Personalised social care and personal budgets in England: the individual budget pilot programme." *삼육대학교 국제세미나, Reforming Social Care across the Borders*.
- Health and Social Care Information Centre. 2013. *Community Care Statistics, Social Services Activity - England, 2011-12, Final release*. Leeds; HSCIC.
- HM Government. 2007. *Putting people first: a shared vision and commitment to the transformation of adult social care*. London: HM Government.
- Hohnen, P. 2006. "Consumers without money: consumption patterns and citizenship among low-income families in Scandinavian welfare societies". in Glendinning, C. and Kemp, P. (eds). *Cash and Care - Policy challenges in the welfare state*. Bristol: The Policy Press. 79-94.
- Jens Fritsch. 2008. *Das Persönliche Budget in stationären Wohneinrichtungen für Menschen mit geistiger Behinderung*, Universität Bochum
- Kerstin Rummel. 2011. *Zur Kostenüberschreitung nach § 17 Abs. 3 S. 4 SGB IX beim Persönlichen Budget*, Diskussionsbeitrag: Rehabilitations- und Teilhaberecht, Deutsche Vereinigung für Rehabilitation
- Kittay, E. F. 1999. *Love's Labor: Essays on Women, Equality and Dependency*. New York: Routledge.
- Kodner, D. L. 2003. "Consumer-directed services: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integrated systems of care".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grated Care*, 3(17): 1-7.
- Leadbeater, C. 2004. *Personalisation through participation: a new script for public services*, London: Demos.
- Martina Steinke. 2009. *Das Personliche Budget für Menschen mit hohem Unterstützungsbedarf* Deutscher Paritatischer Wohlfahrtsverband -. Gesamtverband e. V
- Ministerium für Arbeit, Integration und Soziales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2011. *Persönliches Budget in Nordrhein-Westfalen, Antworten auf häufig gestellte Fragen*.
- Morris, J. 1993. *Independent lives: Community Care and Disabled People*. Basingstoke: Macmillan.
- Morris, J. 2006. "Independent living: the role of the disability movement in the development of government policy". In Glendinning, C. and Kemp, P. (eds). 2006. *Cash and Care: Policy Challenges in the Welfare State*. Bristol: The Policy Press, 235-248.
- Oliver, M. 1996. *Understanding Disability - from theory to practice*. NY: St. Martin's press.
- Schneider, U. and Reyes, C. 2007. "Mixed blessing: Long-term care benefits in Germany". in Ungerson, C. and Yeandle, S. (eds). *Cash for Care in Developed Welfare States*. New York: Palgrave Macmillan, 137-165.
- Schore, J., Foster, L. and Phillips, B. 2007. "Consumer enrolment and experiences in the Cash and Counseling Program". *Health Services Research*, 42(1), part 2: 446-266.

- Shakespeare, T. and Corker, M. (eds). 2002. Disability/postmodernity: Embodying Disability Theory. London: Continuum.
- Spandler, H. 2004. "Friend or foe? Towards a critical assessment of direct payments". Critical Social Policy, 24(2): 187-209.
- Tilly, J. and Wiener, J. M. 2001. "Consumer-directed home and community services programs in eight states: policy issues for older people and government". Journal of Aging and Social Policy, 12(4): 1-26.
- Timonen, V., Convery, J. and Cahill, S. 2006. "Care revolutions in the making?: A comparison of cash-for-care programmes in four european countries". Ageing and Society, 26: 455-474.
- Ungerson, C. 1997. "Social politics and the commodification of care". Social Politics, 4(3): 362-81.
- Ungerson, C. 2004. "Whose empowerment and independence? A cross-national perspective on cash for care schemes". Ageing and Society, 24: 189-212.
- Ungerson, C. and Yeandle, S. (eds.). 2007. Cash for Care in Ddeveloped Welfare States. Basingstoke: Palgrave Macmillan
- Unison. 2001. Home care: The forgotten service. London: Unison.
- Westerberg, B. 2013. Personal Assistance-a revolution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 Westner, K. 2010. Personal Assistance in Sweden. Independent Living Institute.

## <관련 홈페이지>

- [http://mlzstatline.cbs.nl/StatWeb/publication/?DM=SLNL&PA=40028NED&D1=0&D2=\(1-4\)-l&HDR=G1&STB=T&VW=T](http://mlzstatline.cbs.nl/StatWeb/publication/?DM=SLNL&PA=40028NED&D1=0&D2=(1-4)-l&HDR=G1&STB=T&VW=T)
- <http://www.aihw.gov.au/disability/>
- [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Rehabilitation-331.html](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Rehabilitation-331.html)
- [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Rehabilitation-Zustaendigkeit-805.html](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Rehabilitation-Zustaendigkeit-805.html)
- [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Rehabilitation-Zustaendigkeit-805.html](http://www.betanet.de/betanet/soziales_recht/Rehabilitation-Zustaendigkeit-805.html)
- [http://www.budget.bmas.de/MarktplatzPB/DE/StdS/FAQ/faq\\_node.html#doc726966bodyText15](http://www.budget.bmas.de/MarktplatzPB/DE/StdS/FAQ/faq_node.html#doc726966bodyText15)
- [http://www.budget.bmas.de/MarktplatzPB/DE/StdS/FAQ/faq\\_node.html#doc726966bodyText24](http://www.budget.bmas.de/MarktplatzPB/DE/StdS/FAQ/faq_node.html#doc726966bodyText24)
- <http://www.cowalk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386>
- <http://www.dds.ca.gov>
- <http://www.disabilityrightsca.org>
- <http://www.independentliving.org>
- [http://www.payscale.com/research/AU/Job=Personal\\_Assistant/Salary](http://www.payscale.com/research/AU/Job=Personal_Assistant/Salary)
- <https://www.and.org.au/pages/disability-statistics.html>
- <https://www.ciz.nl/zorg-uit-wlz/wlz-wegwijzer/Paginas/default.aspx>
- <https://www.forsakringskassan.se>
- <https://www.medicaid.gov>
- <https://www.ndis.gov.au/index.html>
- [https://www.regelhulp.nl/bladeren/\\_/artikel/wat-is-een-pgb/](https://www.regelhulp.nl/bladeren/_/artikel/wat-is-een-pgb/)
- <https://www.rijksoverheid.nl/onderwerpen/zorg-en-ondersteuning-thuis/vraag-en-antwoord/pgb-aa-nvragen>
- <https://www.svb.nl/int/nl/pgb/sitemap.jsp>
- <https://zeroproject.org>

## <부록 1> 개인예산 산정을 위한 자기사정 질문지(영국 Kingstone City Council 자료)

### □ 질문지에 답하기 전에 알아야 할 사항

- 이 질문지는 당신이 도움을 받는데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계산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신 스스로 답해도 되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대신해 답해도 됩니다.
- 질문 1번부터 7번까지는 반드시 당신 혹은 당신의 대리인이 답해야 합니다.
- 질문 8번은 당신에게 보호자 혹은 가족(비용을 받지 않고 당신을 돕는 사람들)이 있다면 반드시 그들이 답해야 합니다.
- 각 질문들을 읽은 후 당신과 당신의 욕구에 가장 부합하는 문장에 표시를 합니다.

### □ 당신의 개인 예산

- 이 질문지는 지방정부가 발달장애인들을 위해 어떻게 예산을 분배해야 하는지를 산출해내기 위해 만들고 있는 가이드입니다. 우리는 제도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 노력합니다.
- 이 질문지는 일 년 동안 당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얼마만큼의 비용이 드는지를 말해 줄 것입니다. 실제로 당신이 받게 될 돈 액수는 당신의 상황을 고려해서 정합니다. 우리는 당신과 개별적으로 돈 액수에 관해서 상담 할 것입니다.

### <질문 1 - 당신 스스로 돌보기>

당신을 돌보기 위해(당신 자신을 건사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씻고, 입고, 먹고 당신 집을 관리하는 등 당신이 집에서 혼자 무언가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나는 내 자신을 보살피기 위해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나는 절대로 집에 혼자 남겨져서는 안 된다.	<input type="checkbox"/>	3
B) 나는 내 자신을 돌보기 위해 약간의 도움을 요구한다. 나는 꽤 오랫동안 혼자 집에 있어도 괜찮다.	<input type="checkbox"/>	2
C) 나는 나를 돌보기 위해 도움을 가끔 받기를 원한다. 나는 집이나 내가 아는 장소에서 오랜 시간 있어도 괜찮다.	<input type="checkbox"/>	1
D) 나는 나를 돌보는 데 자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스스로 거의 모든 시간을 혼자 있어도 괜찮다.	<input type="checkbox"/>	0

### <질문 2 - 관계>

당신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이 부분은 당신의 가족과 당신과 함께 사는 사람들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당신 친구들과 당신이 아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과 함께 하는 데 비용을 받는 사람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A) 나는 외부에 가족이나 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을 제외한 그 어떤 관계도 없다. 나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3
B) 나는 관계 맺고 있는 이들이 조금 있지만 더 많이 맺고 싶다. 나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2
C) 나는 내게 맞는 정도만큼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1
D) 나는 내게 맞는 정도만큼 관계를 맺고 있다. 나는 그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0

<질문 3 - 지역 사회 일원이 되기>

당신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에 속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이것은 당신이 지역 안에 있는 지역 가게를 이용한다거나 도서관, 영화관, 클럽과 지역 센터, 교회나 예배를 드리 기 위한 장소에 가는 것과 지역 기관에 참여하는 것 등을 말합니다. 이 질문은 지방정부를 통해서 제공되는 서비스(day service 등)에 관련된 내용은 제외합니다.

A)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하는 것이 없다. 나는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3
B)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무언가를 조금 한다. 나는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2
C)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한다. 나는 그것들을 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1
D)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많은 것들을 한다. 가끔 그것들을 계속 하기 위한 도움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0

<질문 4 - 일, 여가와 학습>

당신이 일을 하거나 직업을 갖기 위해,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무언가를 즐겁게 취미 삼아 하기 위 해서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이것은 당신이 당신의 여가 시간에 일을 하는 기회를 갖거 나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한 것에 관한 것을 말합니다. 이 질문은 day service와 같은 활동에 대한 것은 제외합니다.

A)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여가 활동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이 많지 않다. 나는 더 많이 하기 위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3
B) 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 새로운 것을 배우거나 여가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등이 조금 있다. 나는 더 많이 하기 위한 도움을 약간 필요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2
C) 나는 직장이나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 때문에 바쁘며, 내 여가 시간은 잘 즐 기고 있다. 나는 이런 것을 유지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1
D) 나는 바쁘게 지내고 있고 내 여가 시간도 잘 즐기고 있다. 나는 이렇게 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는 가족, 친구나 동료가 있다.	<input type="checkbox"/>	0

<질문 5 - 결정 내리기>

누가 당신 인생에 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까? 당신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도움을 더 필요로 합니까? 이 질문은 당신이 어디에 살지, 누가 당신을 돕고 당신 돈을 관리할지 등 중요한 결정을 할 기회에 관한 것입니다.

A) 다른 사람들이 내 생활에 관한 결정을 거의 모두 내려준다. 나는 더 많은 결정들을 위한 도움을 요구한다.	<input type="checkbox"/>	3
B) 나는 그날그날의 생활하는 것과 관련 있는 것에 관한 결정은 대부분 내가 하 지만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는 영향력이 없다. 나는 이런 것을 위해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2
C) 나는 내 생활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가 한다. 나는 결정을 내릴 때 도움과 조언을 필요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1
D) 나는 내 생활에 관한 모든 결정을 내가 한다. 나는 결정을 내릴 때 조언을 가끔 필요로 한다.	<input type="checkbox"/>	0

<질문 6 -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내기>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내기 위해서 당신은 얼마만큼 도움을 필요로 합니까? 안전하게 지낸다는 것은 사람들마다 각기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이 집에서 요리를 하려고 가스레인지 사용하거나 위층에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할 때 안전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것일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낸다는 것은 또한 당신이 밖에서 버스를 타거나 길을 걷고 있을 때 안전하기를 원한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A) 나는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온종일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집 안에 있을 때나 집 밖에 있을 때 모두 해당된다.	<input type="checkbox"/>	15
B) 나는 안전하게 있기 위해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집 안에서보다 밖에 나갔을 때 많은 도움을 받아야 한다.	<input type="checkbox"/>	10
C) 나는 안전하게 지내기 위해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나는 집안에서는 대부분 괜찮지만 외출을 해서 어떠한 장소에 가기 위해서는 도움을 필요로 할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4
D)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할 때 어느 정도 도움만 받으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다.	<input type="checkbox"/>	2
E) 나는 안전하게 지내기 위한 그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0

<질문 7 - 행동과 위험 >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 당신에게 상처주거나 화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당신의 행동과 당신이 하고 있는 행위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이 다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든다거나 당신 혹은 당신 주변 사람들을 다치게 하지는 않습니까?

A) 나는 종종 나 혹은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행동이나 말을 한다. 나 자신이나 다른 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	<input type="checkbox"/>	15
B) 나는 가끔 나 자신이나 다른 이에게 상처가 될 수 있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나 자신이나 다른 이를 다치게 할 수 있는 위험이 조금 존재한다.	<input type="checkbox"/>	10
C) 내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 어쩌면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할 수는 있지만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 그 어떤 위험도 존재하지 않는다.	<input type="checkbox"/>	5
D) 과거에 나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하고는 했지만 현재는 문제가 전혀 없다.	<input type="checkbox"/>	3
E) 나는 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화나게 하는 행동을 한 적이 전혀 없다.	<input type="checkbox"/>	0

<질문 8 - 당신의 가족 혹은 보호자(당신을 돕는데 비용을 받지 않는 사람들)>

<가족 혹은 보호자 응답> : 보호를 하는 것이 당신 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칩니까?

만약 당신에게 비용을 받지 않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에 체크 표시를 해주십시오. :

A) 보호자 역할을 한다는 게 내 인생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내게는 더 이상 이 역할을 계속할 의지가 없거나 현재는 더 이상 이 역할을 해나갈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15
B) 보호자 역할은 내 인생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고 있다. 나는 기꺼이 보호 역할을 계속 할 마음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10
C) 나는 보호자 역할을 해야 해서 내 그날그날의 업무를 가는데 어려움이 조금 있다. 나는 보살핌을 계속 해나가기 위해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다.	<input type="checkbox"/>	7



## <부록 2> 개인예산 지급 합의서

합의는 아래 사람들 사이에서 체결됨

- 개인 예산 비용을 지급 받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발달 장애인)
-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보호자, 지원 중개자)
- 킹스톤 지방정부

합의의 근거

- 이 합의는 아래와 같은 근거에 의해 만들어진다.
  - 욕구에 대한 질문지가 완성되면 당신은 Care Plan 내용대로 계획된 성과를 충족시킬 수 있게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 당신의 지원 계획은 당신의 개인 예산 비용이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에 관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 당신의 Care Manager가 당신의 지원 계획안에 동의해야 합니다.
  - 당신의 개인예산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은행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당신 명의여도 되고 당신이 지정한 당신을 돕는 다른 사람 명의여도 됩니다).

개인 예산 지급에 관해

당신의 개인 예산 할당량    £ _____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금액 (자부담이 있는 경우)    £ _____ (이 금액이 정부가 지급하는 일 년치 개인예산 금액)
시작일: _____                      종료일: _____
당신은 매월    £ _____ 을 지급받게 됩니다.

※ 이 지급은 당신의 수당(보조금)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부록 3> 개인예산 연간 사용 보고서

이름 :

일 년 동안 사용한 것을 모두 포함한 은행계좌 지출수입내역서 사본을 동봉했습니다.

수입금액

- A. 개인예산 지급액: £ \_\_\_\_\_  
B. 전년도 이월금(해당되는 경우): £ \_\_\_\_\_  
C. 총 합계 (A+B) = £ \_\_\_\_\_

지출금액

- D. 제공 기관에 지불한 돈 £ \_\_\_\_\_  
E. 기타 일하는 사람에게 지불한 비용 £ \_\_\_\_\_  
F. 이동수단 비용  
※ 예시 : 버스 요금, 택시 요금 등) £ \_\_\_\_\_  
G. 서비스  
※ 예시 : 성인 교육 강좌, 훈련과 개발 코스 등) £ \_\_\_\_\_

H. 장비와 용품  
※ 예시 : 위생용품 등) £ \_\_\_\_\_

I. 기타

- J. .... £ \_\_\_\_\_  
..... £ \_\_\_\_\_  
..... £ \_\_\_\_\_

K 총 금액 (D부터 I까지) = £ \_\_\_\_\_

다음 연도를 위해 이월되어야 할 금액

○ C에서 K를 뺀 금액 = £ \_\_\_\_\_

※ 주의 : 연말에 이월 가능 금액 - 2,000 파운드 혹은 한 달 치 비용 이하

저는 이 기록이 사실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서명 : 날짜 :

직원 기입용 :

서비스 사용자의 Care Manager \_\_\_\_\_